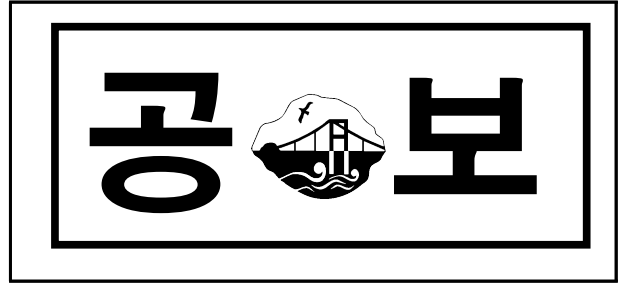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750호 2023. 6. 20.(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683호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684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685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686호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687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688호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8
남해군 조례 제2689호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690호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2
남해군 조례 제2691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6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27
--------------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78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44
남해군 고시 제2023-79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96
남해군 고시 제2023-80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99
남해군 고시 제2023-81호	군도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02
남해군 고시 제2023-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5
남해군 고시 제2023-83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108
남해군 고시 제2023-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14
남해군 고시 제2023-85호	남해읍(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115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841호	공인 등록 공고	118
남해군 공고 제2023-855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0
남해군 공고 제2023-874호	남해군 공영장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23
남해군 공고 제2023-882호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28
남해군 공고 제2023-892호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	133

## 남해군의회 규칙

남해군의회 규칙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6
----------	-----------------------------	-----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한다.

제2조(「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  
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3조(「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제4조(「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화장장의 내용란 중 “만15세” 를 각각 “15세” 로 한다.

**제5조(「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만 24세” 를 “24세” 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 중 “만 18세” 를 “18세” 로 하고, 같은 목 청소년 중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를 “12세 이상 18세 미만” 으로 하며, 같은 목 어린이 중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을 “3세 이상 12세 미만” 으로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을 “1세 이상 12세 미만” 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소인 중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를 “7세 이상 18세 이하” 로 하고, 같은 대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소인 중 “만 7세 이상 만18세” 를 “7세 이상 18세” 로 하고, 같은 목 대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만 5세” 를 “5세” 로 한다.

**제6조(「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고란 중 “만 3세” 를 각각 “3세” 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만 5세” 를 “5세” 로 한다.

**제7조(「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를 “7세 이상 12세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를 “13세 이상 18세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를 “19세 이상 64세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만 18세” 를 “18세”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 를 “10세 이상 55세 이하” 로 한다.

제8조(「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2호 중 “만 18세” 를 “18세” 로 한다.

제9조(「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0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한다.

제11조(「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만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2조(「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만 60세” 를 “60세” 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어린이 중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를 “7세 이상 12세 이하” 로 하고, 같은 표 청소년 중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를 “13세 이상 18세 이하” 로 하며, 같은 표 성인 중 “만19세” 를 “19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3호

##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남해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기술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용역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역과제 업무 담당 부서장, 본청의 각 국장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용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일반용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긴급한 사업시행이 요구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을 완료한 사업
4.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타당성·유사성 및 중복성
2. 용역 사업계획, 수립기간 및 예산 등의 적정성
3. 과업 내용의 적정성
4. 용역의 점검 및 결과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용역과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남해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 방법 및 용역 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안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장이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군의 전체 용역과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과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용역과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용역과제 담당 부서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주관부서는 용역결과와 활용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4호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출자금의 회수금 및 출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5호

##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각 국장, 기획조정실장, 핵심전략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6호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 을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에” 를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군민” 을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의회” 를 “남해군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무과장” 을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7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7조제4호 후단 중 “「남해군 계획 조례」”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

제47조 중 “군수·부군수” 를 “부군수” 로 한다.

제4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 단서 중 “1급·2급” 을 “2급” 으로 한다.

제53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나목 휴게실란 다음에 청소근로자 휴게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소근로자 휴게실	1.5㎡ × 담당 근로자 수	성별 구분, 최소면적 6㎡ 이상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8호

##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로, “경제살리기위원회” 를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689호

##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1) 어장 관리선 지정의 정수

어업면허의 종류	어업의종류	어장 규모(면적)	정수	비 고
정치망어업	정치망	소형 (1ha 미만)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 어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소형 (1ha이상~5ha미만)	2척	
		중형 (5ha이상~10ha미만)	2척	
		대형 (10ha이상)	3척	
마을어업	마을어업	10ha미만	2척	* 마을어업권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척까지 지정 받을 수 있다.
		10ha이상~30ha미만	3척	
		30ha이상	4척	

(2) 면허양식장 관리선 지정의 정수

양식업면허의 종류	양식업의 종류(방법)	양식장 규모(면적)	정수	비 고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바닥식	10ha 미만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10ha 이상	2척	
패류 양식업	수하식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2척	
	바닥식	5ha 미만	1척	
		5ha 이상~10ha 미만	2척	
		10ha 이상	3척	
	가두리식	5ha 미만	1척	
5ha 이상		2척		
어류등 양식업	가두리식	1ha 미만	1척	
		1ha 이상 ~ 2ha 미만	2척	
		2ha 이상	3척	
	수하식,바닥식,축제 식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2척	
	복합양식업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협동양식업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3) 관리선의 사용 승인 정수 및 승인 기준

어장 및 양식장의 관리선 사용 승인의 정수는 두지 않는다. 다만, 어장 및 양식장의 규모, 사용목적, 해당어장의 관리선 지정 현황 등을 판단하여 승인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남해군 조례 제2690호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제7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지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91호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국내 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을 “여비는 영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6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발령한다.

2023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적 설비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도급사업 근로자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 기본원칙)**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은 각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활동은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각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③ 각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④ 근로자는 군 및 해당 사업장이 실시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체계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그 조직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서 내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장 또는 팀장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관련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보건)**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점검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장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3조(교육결과 기록)**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남해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근로자 위원 6명, 사용자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5명

④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3명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 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논의 및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점검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공동위원장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각 호에 따른다

-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3. 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 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2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는 양측 대표위원이 협의하여 재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재투표 결과 가부동수로 의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사 각1인의 간사를 둔다.
- ⑩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참고인의 출석)** ①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청 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 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중 각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 합의에 의하여 개최하며, 실무협의회 개최 관련 제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 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차기 협의회에서 협의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과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1. 관할 지방노동지청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3. 산업안전보건 대행기관 등

**제2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의결·결정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26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소속 사업장에 공문으로 안내하거나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검증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영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표준작업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 시기는 최초 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3조(비상연락체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사업장의 내부뿐만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 6 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4조(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186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에 따라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자에 의한 수시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방법 등은 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에 따른다.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7조(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에 따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종사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한다.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때 해당 제조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신설기관은 1년 이내)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을 유지하고, 교육 및 주지시키는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협조한다.

**제4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청소, 조도, 환기, 온도, 습도,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구급용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 2. 외상용 소독약
- 3. 지혈대, 부목 및 들것
- 4. 화상약(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

② 관리감독자는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용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 7 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4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군수는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부서의 장을 업무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을 선정하기 전에 적격가능한지 평가
2. 군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및 총괄책임자와 수급인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4. 수급인이 진행하는 안전·보건교육 장소제공 및 필요한 경우 교육자료 지원
5. 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유해·위험작업의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7. 위생시설이 필요한 경우 장소제공 또는 군 소속 위생시설의 이용

**제4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총괄책임자는 도급작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작업의 사용·운반하거나 철거·개조·분해·해체하는 작업
2. 제1호의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수급인에게 대한 시정조치)** ① 총괄책임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반이 있을 경우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작업 중지 및 작업자 철수 조치
2. 시정 지시서 발행

**제 8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6조(사고발생 처리 절차)** ① 사고 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며, 관리감독자는 재해자의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의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을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사고조사는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원인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고사례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은 교육, 전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또는 산업재해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사고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협조해야 한다.

**제48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대책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발생 원인 등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 9 장 보 칙

**제49조(문서보존연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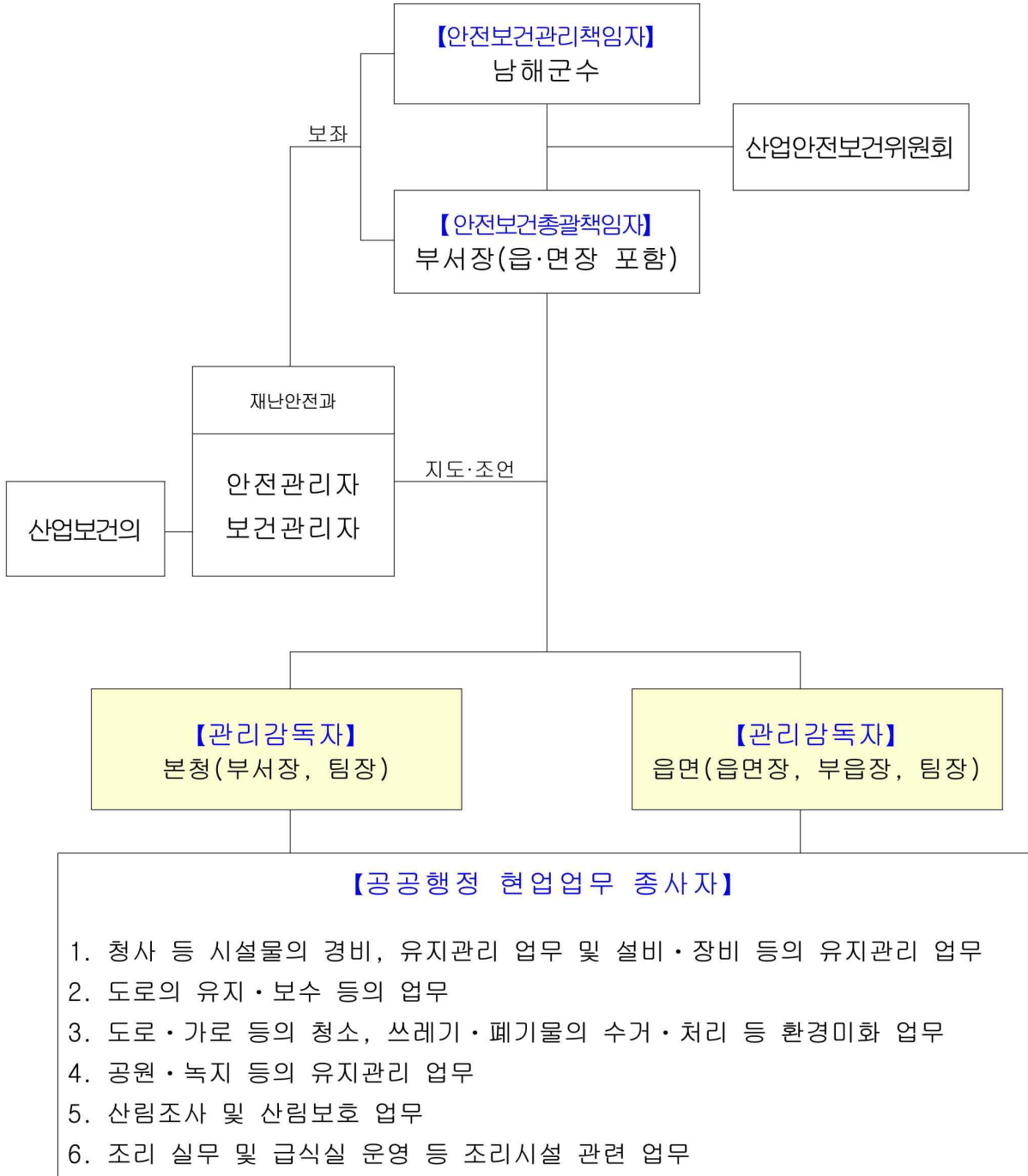
제50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 또는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부서의 담당 실장·단장·과장·읍장·면장 등이 해당 도급업 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수행

[별지 제1호서식]

## 202 년 제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대 리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의 제3항에 근거하여 제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 . . .

위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귀하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 202 년 분기 남해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 년 월 일 ( ) (00:00 ~00:00)	장 소		회의구분	정기/임시	
참 석 위 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책 책	성 명	서 명	책 책	성 명	서 명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안전관리자			위원		
	보건관리자			위원		
상 정 안 건						
심 의 결 과						
기 타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78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11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 사업목적

남해군(대계, 화계 등 16개 지역)일원의 하수처리방식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정 생활하수의 하수관로 유입으로 인한 악취 및 하천 수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16개 마을
- 면 적 : 1.171km<sup>2</sup>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 하수도시설(하수관로)

- 시설개요

구 분		규 격	단 위	사업개요	비 고
오수 관로	합 계	-	m	23,387	
	자연유하	D150mm	m	7,369	
		D200mm	m	9,396	
	압 송	D80mm	m	6,622	
맨홀		소형맨홀	개소	399	
		1호맨홀	개소	367	
배수설비		-	가구	951	
오수중계펌프장		-	개소	26	

5. 예정 하수처리구역 : 장포, 전도 등 16개 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 2023. 06. ~ 2026. 05.(변경될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8. 기타 관계서류는 남해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55-860-333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남 해 군 공 보

2023년 6월 20일

제 750 호 (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장포마을(창선면 진동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창선면 진동리	181	대	김희*	도로
2	창선면 진동리	181-1	대	하찬*	도로
3	창선면 진동리	182	전	김희*	도로
4	창선면 진동리	183	전	김헌*외2인	도로
5	창선면 진동리	185-2	전	한환*	도로
6	창선면 진동리	185-3	전	김경*	도로
7	창선면 진동리	186	답	김미*	도로
8	창선면 진동리	187	답	김미*	도로
9	창선면 진동리	189	답	박동*	도로
10	창선면 진동리	191-1	답	하찬*	도로
11	창선면 진동리	192-5	대	경상남도	도로
12	창선면 진동리	192-6	대	경상남도	도로
13	창선면 진동리	192-7	대	경상남도	도로
14	창선면 진동리	195-1	대	경상남도	도로
15	창선면 진동리	195-2	잡	경상남도	도로
16	창선면 진동리	195-3	도	경상남도	
17	창선면 진동리	199	임	김해김씨문중	도로
18	창선면 진동리	211-1	대	정진*	도로
19	창선면 진동리	217	대	하외*	도로
20	창선면 진동리	217-3	답	하외*	도로
21	창선면 진동리	221	대	주윤*	도로
22	창선면 진동리	222	대	박명*	도로
23	창선면 진동리	223	대	강월*	도로
24	창선면 진동리	223-1	대	김효*	도로
25	창선면 진동리	223-2	창	박명*	도로
26	창선면 진동리	223-3	대	박성*	도로
27	창선면 진동리	224	대	탁태*	도로
28	창선면 진동리	225	답	정길*	도로
29	창선면 진동리	226-1	대	김두*	도로
30	창선면 진동리	236	대	김병*	도로
31	창선면 진동리	237	대	박광*	도로
32	창선면 진동리	237-1	대	김영*	도로
33	창선면 진동리	238-1	대	양순*	도로
34	창선면 진동리	238-4	대	서수*	도로
35	창선면 진동리	238-5	대	김길*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창선면 진동리	563-9	도	남해군	도로
37	창선면 진동리	576-6	잡	남해군	도로
38	창선면 진동리	1217	구	국(농림수산부)	도로
39	창선면 진동리	1218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0	창선면 진동리	1220-2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1	창선면 진동리	산267-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2	창선면 진동리	산278-1	임	김희*	도로

- 전도마을(삼동면 금송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삼동면 금송리	158-5	도	남해군	도로
2	삼동면 금송리	158-6	전	최은* 외1	도로
3	삼동면 금송리	159-2	대	이동*	도로
4	삼동면 금송리	159-3	도	암분*	도로
5	삼동면 금송리	159-4	도	이동*	도로
6	삼동면 금송리	159-5	도	이동*	도로
7	삼동면 금송리	160-2	도	남해군	도로
8	삼동면 금송리	161-1	대	성영*	도로
9	삼동면 금송리	161-2	도	남해군	도로
10	삼동면 금송리	161-3	대	장일*	도로
11	삼동면 금송리	163	대	하청*	도로
12	삼동면 금송리	163-3	도	하희*	도로
13	삼동면 금송리	165-2	도	남해군	도로
14	삼동면 금송리	165-4	도	남해군	도로
15	삼동면 금송리	167-1	도	강찬*	도로
16	삼동면 금송리	167-2	답	조향*	도로
17	삼동면 금송리	168-1	대	박영*	도로
18	삼동면 금송리	168-2	도	박덕*	도로
19	삼동면 금송리	169-1	도	조민*	도로
20	삼동면 금송리	169-2	도	임덕*	도로
21	삼동면 금송리	169-3	답	조향*	도로
22	삼동면 금송리	169-4	답	임영*	도로
23	삼동면 금송리	172-2	도	장영*	도로
24	삼동면 금송리	173-1	전	장원*	
25	삼동면 금송리	173-3	도	암분*	도로
26	삼동면 금송리	173-4	대	장정*	
27	삼동면 금송리	176-1	대	임수*	도로
28	삼동면 금송리	176-2	대	임수*	도로
29	삼동면 금송리	177-2	전	장경*	도로
30	삼동면 금송리	191-1	대	장원*	도로
31	삼동면 금송리	191-2	도	장영*	도로
32	삼동면 금송리	192-1	답	장일*	도로
33	삼동면 금송리	192-2	도	남해군	도로
34	삼동면 금송리	193-1	답	장일*	도로
35	삼동면 금송리	193-2	도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삼동면 금송리	194-1	답	노춘*	도로
37	삼동면 금송리	194-2	도	남해군	도로
38	삼동면 금송리	196-2	도	최화*	도로
39	삼동면 금송리	522	전	이상*	도로
40	삼동면 금송리	522-2	묘	이상*	도로
41	삼동면 금송리	524-3	대	강연*	도로
42	삼동면 금송리	525-1	도	남해군	도로
43	삼동면 금송리	525-2	도	남해군	도로
44	삼동면 금송리	525-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5	삼동면 금송리	526-7	도	남해군	도로
46	삼동면 금송리	526-1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7	삼동면 금송리	526-1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8	삼동면 금송리	526-15	도	김호*	도로
49	삼동면 금송리	527-5	구	남해군	도로
50	삼동면 금송리	527-6	답	남해군	도로
51	삼동면 금송리	531-2	도	남해군	도로
52	삼동면 금송리	531-3	대	박동*	도로
53	삼동면 금송리	533	도	남해군	도로
54	삼동면 금송리	534-1	도	남해군	도로
55	삼동면 금송리	535-1	도	이규*	도로
56	삼동면 금송리	544-8	임	남해군	도로
57	삼동면 금송리	545-4	임	남해군	도로
58	삼동면 금송리	545-5	임	남해군	도로
59	삼동면 금송리	546	답	남해군	도로
60	삼동면 금송리	546-2	구	남해군	도로
61	삼동면 금송리	547-1	답	남해군	도로
62	삼동면 금송리	547-2	도	남해군	도로
63	삼동면 금송리	547-3	답	남해군	도로
64	삼동면 금송리	547-4	도	남해군	도로
65	삼동면 금송리	547-5	구	남해군	도로
66	삼동면 금송리	547-6	구	남해군	도로
67	삼동면 금송리	584-2	도	박덕*	도로
68	삼동면 금송리	585-2	전	최명*	도로
69	삼동면 금송리	585-5	도	장인*	도로
70	삼동면 금송리	587-1	도	박덕*	도로
71	삼동면 금송리	588-1	도	박덕*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72	삼동면 금송리	589	답	장인*	도로
73	삼동면 금송리	589-1	답	장인*	도로
74	삼동면 금송리	591	도	남해군	도로
75	삼동면 금송리	591-2	답	최막*	도로
76	삼동면 금송리	592-1	도	임종*	도로
77	삼동면 금송리	592-2	답	장인*	도로
78	삼동면 금송리	594-1	도	박갑*	도로
79	삼동면 금송리	594-2	답	손원*	도로
80	삼동면 금송리	594-3	답	손원*	도로
81	삼동면 금송리	596-1	도	장명*	도로
82	삼동면 금송리	596-3	답	박동*	도로
83	삼동면 금송리	597-1	도	박태*	도로
84	삼동면 금송리	599-1	대	최막*	도로
85	삼동면 금송리	599-4	대	강경*	도로
86	삼동면 금송리	599-5	대	장일*	도로
87	삼동면 금송리	609-1	전	하태*	도로
88	삼동면 금송리	609-2	도	이태*	도로
89	삼동면 금송리	610-2	도	임영*	도로
90	삼동면 금송리	611-1	대	이경*	도로
91	삼동면 금송리	611-2	도	남해군	도로
92	삼동면 금송리	612-1	대	김영*	도로
93	삼동면 금송리	612-8	대	하태*	도로
94	삼동면 금송리	612-9	대	김재*	도로
95	삼동면 금송리	612-10	도	장인*	도로
96	삼동면 금송리	612-11	도	하태*	도로
97	삼동면 금송리	612-12	도	고봉*	도로
98	삼동면 금송리	612-14	잡	국(기획재정부)	도로
99	삼동면 금송리	615-2	도	남해군	도로
100	삼동면 금송리	621-1	대	조성*	도로
101	삼동면 금송리	622-1	대	하동*	도로
102	삼동면 금송리	622-2	대	하득*	도로
103	삼동면 금송리	622-5	대	김창*	도로
104	삼동면 금송리	622-6	도	하상*	도로
105	삼동면 금송리	622-8	전	하선*	도로
106	삼동면 금송리	622-9	전	하득*	도로
107	삼동면 금송리	623-2	도	박종*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08	삼동면 금송리	629-9	잡	국(기획재정부)	도로
109	삼동면 금송리	631-1	대	이준*	도로
110	삼동면 금송리	631-2	도	이규*	도로
111	삼동면 금송리	632-1	대	강매*	도로
112	삼동면 금송리	632-2	도	이태*	도로
113	삼동면 금송리	635-2	도	남해군	도로
114	삼동면 금송리	638	대	박은*	도로
115	삼동면 금송리	640-1	대	손애*	도로
116	삼동면 금송리	640-2	도	남해군	도로
117	삼동면 금송리	641-5	대	김종*	도로
118	삼동면 금송리	641-12	도	박석*	도로
119	삼동면 금송리	641-13	도	김종*	도로
120	삼동면 금송리	641-14	도	임갑*	도로
121	삼동면 금송리	642-1	대	김종*	도로
122	삼동면 금송리	642-2	대	정영*	도로
123	삼동면 금송리	642-3	대	김종*	도로
124	삼동면 금송리	643	대	함욱*	도로
125	삼동면 금송리	645-2	도	박덕*	도로
126	삼동면 금송리	645-3	전	박덕*	도로
127	삼동면 금송리	645-4	전	박덕*	도로
128	삼동면 금송리	646-1	대	노춘*	도로
129	삼동면 금송리	646-2	도	남해군	도로
130	삼동면 금송리	647	대	하길*	도로
131	삼동면 금송리	648	대	고명*	도로
132	삼동면 금송리	649-1	대	강수*	도로
133	삼동면 금송리	649-2	도	강수*	도로
134	삼동면 금송리	650-3	대	이종*	도로
135	삼동면 금송리	650-4	대	손애*	도로
136	삼동면 금송리	651-1	대	조순*	도로
137	삼동면 금송리	651-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8	삼동면 금송리	652-1	대	김재*	도로
139	삼동면 금송리	652-3	도	이채*	도로
140	삼동면 금송리	659	전	조향*	도로
141	삼동면 금송리	659-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42	삼동면 금송리	659-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43	삼동면 금송리	659-7	대	노춘*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44	삼동면 금송리	660	도	남해군	도로
145	삼동면 금송리	661	전	박두*	도로
146	삼동면 금송리	661-1	전	박두*	도로
147	삼동면 금송리	677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48	삼동면 금송리	677-6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49	삼동면 금송리	677-8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50	삼동면 금송리	677-10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51	삼동면 금송리	677-11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52	삼동면 금송리	677-12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53	삼동면 금송리	677-13	유	국(기획재정부)	도로
154	삼동면 금송리	678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55	삼동면 금송리	679-2	창	남해군	도로
156	삼동면 금송리	702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57	삼동면 금송리	705-8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58	삼동면 금송리	705-9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59	삼동면 금송리	706-5	잡	남해군	도로
160	삼동면 금송리	706-7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61	삼동면 금송리	706-8	잡	남해군	도로
162	삼동면 금송리	706-9	잡	남해군	도로
163	삼동면 금송리	711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64	삼동면 금송리	711-3	도	기획재정부	도로
165	삼동면 금송리	71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66	삼동면 금송리	725-1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67	삼동면 금송리	726-4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68	삼동면 금송리	726-5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69	삼동면 금송리	731-1	전	남해군	도로
170	삼동면 금송리	732-3	전	남해군	도로
171	삼동면 금송리	732-4	전	남해군	도로
172	삼동면 금송리	890-10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73	삼동면 금송리	890-14	유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74	삼동면 금송리	890-15	도	남해군	도로
175	삼동면 금송리	890-16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76	삼동면 금송리	890-18	유	남해군	도로
177	삼동면 금송리	890-20	잡	남해군	도로
178	삼동면 금송리	890-21	잡	남해군	도로
179	삼동면 금송리	891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80	삼동면 금송리	892-1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81	삼동면 금송리	893	답	(주)펜타코리아	
182	삼동면 금송리	893-1	도	남해군	도로
183	삼동면 금송리	893-2	도	(주)탱크테크	도로
184	삼동면 금송리	893-3	도	남해군	도로
185	삼동면 금송리	902-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86	삼동면 금송리	902-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87	삼동면 금송리	1341-18	잡	남해군	도로
188	삼동면 금송리	1342-5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89	삼동면 금송리	1412-8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90	삼동면 금송리	1412-23	잡	남해군	도로
191	삼동면 금송리	1412-24	잡	남해군	도로
192	삼동면 금송리	1412-29	잡	남해군	도로
193	삼동면 금송리	1418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94	삼동면 금송리	1420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95	삼동면 금송리	142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96	삼동면 금송리	1426-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97	삼동면 금송리	1427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98	삼동면 금송리	1428-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99	삼동면 금송리	공유수면	공유수면		

- 화계마을(이동면 화계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이동면 화계리	102-2	도	남해군	도로
2	이동면 화계리	103-4	대	김점*	도로
3	이동면 화계리	104-5	잡	국(기획재정부)	도로
4	이동면 화계리	106-6	대	김점*	도로
5	이동면 화계리	108-2	도	남해군	도로
6	이동면 화계리	110-2	도	남해군	도로
7	이동면 화계리	178-4	도	김종*	도로
8	이동면 화계리	178-6	전	김순*	도로
9	이동면 화계리	179-2	도	남해군	도로
10	이동면 화계리	187-3	도	김명*	도로
11	이동면 화계리	203-2	도	남해군	도로
12	이동면 화계리	209-2	도	남해군	도로
13	이동면 화계리	215-2	도	남해군	도로
14	이동면 화계리	216-4	도	강현*	도로
15	이동면 화계리	242-10	대	임장*	도로
16	이동면 화계리	242-11	잡	박영*	도로
17	이동면 화계리	242-2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8	이동면 화계리	242-33	도	임장*	도로
19	이동면 화계리	242-34	도	박영*	도로
20	이동면 화계리	263-1	도	남해군	도로
21	이동면 화계리	267-1	도	남해군	도로
22	이동면 화계리	268-1	잡	국(국토교통부)	도로
23	이동면 화계리	268-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4	이동면 화계리	268-4	잡	남해군	도로
25	이동면 화계리	270	대	송미*	도로
26	이동면 화계리	273-2	대	박정*	도로
27	이동면 화계리	276	대	조만*	도로
28	이동면 화계리	277	대	박영*	도로
29	이동면 화계리	284	대	김두*	도로
30	이동면 화계리	291	대	박길*	도로
31	이동면 화계리	292-1	도	김영*외6	도로
32	이동면 화계리	292-2	대	김영*	도로
33	이동면 화계리	292-3	대	동영	도로
34	이동면 화계리	292-4	도	김영*외6	도로
35	이동면 화계리	292-5	답	김영*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이동면 화계리	293-1	도	조상*	도로
37	이동면 화계리	293-4	도	조상*	도로
38	이동면 화계리	294-1	도	김강*	도로
39	이동면 화계리	294-4	도	김강*	도로
40	이동면 화계리	295-1	도	남해군	도로
41	이동면 화계리	295-3	전	전영*	도로
42	이동면 화계리	295-4	도	강주*	도로
43	이동면 화계리	295-5	도	강명*	도로
44	이동면 화계리	296-3	도	김철*	도로
45	이동면 화계리	297-3	도	박동*	도로
46	이동면 화계리	299-1	도	국(기획재정부)	도로
47	이동면 화계리	300-2	도	남해군	도로
48	이동면 화계리	311-4	도	경상남도	도로
49	이동면 화계리	311-5	도	박영*	도로
50	이동면 화계리	316-3	도	남해군	도로
51	이동면 화계리	318-6	도	박동*	도로
52	이동면 화계리	319-1	전	한감*	도로
53	이동면 화계리	319-4	도	한감*	도로
54	이동면 화계리	321-13	도	백희*	도로
55	이동면 화계리	321-14	도	임부*	도로
56	이동면 화계리	354-1	도	화계마을회	도로
57	이동면 화계리	355-1	도	조을*	도로
58	이동면 화계리	356-1	대	송영*	도로
59	이동면 화계리	356-4	도	백청*	도로
60	이동면 화계리	362-1	전	남해군	도로
61	이동면 화계리	368-1	도	장덕*	도로
62	이동면 화계리	412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63	이동면 화계리	51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64	이동면 화계리	523	대	화계리마을회	도로
65	이동면 화계리	523-3	대	김상*	도로
66	이동면 화계리	527-3	도	조환*	도로
67	이동면 화계리	527-9	도	남해군	도로
68	이동면 화계리	529-2	도	남해군	도로
69	이동면 화계리	539-2	도	남해군	도로
70	이동면 화계리	541-2	도	남해군	도로
71	이동면 화계리	543-2	도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72	이동면 화계리	546-1	전	박평*	도로
73	이동면 화계리	551-1	전	박영*	도로
74	이동면 화계리	574-2	도	남해군	도로
75	이동면 화계리	575-3	도	남해군	도로
76	이동면 화계리	575-4	도	남해군	도로
77	이동면 화계리	575-5	대	이삼*외1인	도로
78	이동면 화계리	576-1	전	강문*	도로
79	이동면 화계리	577-3	도	최덕*	도로
80	이동면 화계리	581-2	도	박진*	도로
81	이동면 화계리	582-3	대	강병*	도로
82	이동면 화계리	582-4	도	박민*	도로
83	이동면 화계리	582-5	도	한승*	도로
84	이동면 화계리	583-4	도	최성*	도로
85	이동면 화계리	591-2	도	남해군	도로
86	이동면 화계리	592-1	대	유형* 외2인	도로
87	이동면 화계리	592-2	도	남해군	도로
88	이동면 화계리	593-2	도	남해군	도로
89	이동면 화계리	594-1	도	김상*	도로
90	이동면 화계리	594-3	도	남해군	도로
91	이동면 화계리	599-1	도	남해군	도로
92	이동면 화계리	601-1	도	강주*	도로
93	이동면 화계리	602-2	도	남해군	도로
94	이동면 화계리	602-4	도	남해군	도로
95	이동면 화계리	603-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96	이동면 화계리	610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97	이동면 화계리	610-5	대	김점*	도로
98	이동면 화계리	610-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99	이동면 화계리	610-38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 - 봉우마을(설천면 금음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설천면 금음리	607-1	대	박충*	도로
2	설천면 금음리	607-2	대	박선*	도로
3	설천면 금음리	608	대	고재*	도로
4	설천면 금음리	608-1	전	박연*	도로
5	설천면 금음리	609-1	대	김원*	도로
6	설천면 금음리	609-3	대	박연*	도로
7	설천면 금음리	610	대	정안*	도로
8	설천면 금음리	611	임	정안*	도로
9	설천면 금음리	611-2	전	정형*	도로
10	설천면 금음리	611-3	전	박순*외2	도로
11	설천면 금음리	611-4	대	정형*	도로
12	설천면 금음리	613	대	정형*	도로
13	설천면 금음리	614-1	대	장월*	도로
14	설천면 금음리	616	대	정형*	도로
15	설천면 금음리	617	대	정안*	도로
16	설천면 금음리	620-2	대	박한*	도로
17	설천면 금음리	620-3	대	정안*	도로
18	설천면 금음리	620-4	도	정형*	도로
19	설천면 금음리	622	대	박민*	도로
20	설천면 금음리	622-17	도	고영*	도로
21	설천면 금음리	623-2	도	윤희*	도로
22	설천면 금음리	624	전	윤주*	도로
23	설천면 금음리	625-4	도	김태*	도로
24	설천면 금음리	625-5	도	김학*	도로
25	설천면 금음리	626-1	도	장병*	도로
26	설천면 금음리	627-4	도	정형*	도로
27	설천면 금음리	646-2	도	남해군	도로
28	설천면 금음리	646-3	도	고수*	도로
29	설천면 금음리	646-4	도	고수*	도로
30	설천면 금음리	647-2	도	강재*	도로
31	설천면 금음리	647-5	도	유기*	도로
32	설천면 금음리	163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3	설천면 금음리	1634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34	설천면 금음리	1635-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 노량마을(설천면 노량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설천면 노량리	113	대	유명*	도로
2	설천면 노량리	328-10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	설천면 노량리	328-1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	설천면 노량리	335	대	고옥*	도로
5	설천면 노량리	336	대	박용*	도로
6	설천면 노량리	336-1	대	강광*	도로
7	설천면 노량리	337	대	강광*	도로
8	설천면 노량리	353	대	남해군	도로
9	설천면 노량리	355-2	도	경상남도	도로
10	설천면 노량리	355-12	제	국(국토교통부)	도로
11	설천면 노량리	358-2	도	남해군	도로
12	설천면 노량리	359	대	남해군	도로
13	설천면 노량리	378-2	대	남해군	도로
14	설천면 노량리	378-6	도	남해군	도로
15	설천면 노량리	378-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6	설천면 노량리	379-1	대	남해군	도로
17	설천면 노량리	379-4	대	김정*	도로
18	설천면 노량리	380	대	강형*	도로
19	설천면 노량리	382	대	강기*	도로
20	설천면 노량리	384	대	김말*	도로
21	설천면 노량리	392-1	대	정경*	도로
22	설천면 노량리	393	대	오광*	도로
23	설천면 노량리	393-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4	설천면 노량리	393-4	대	노량마을회	도로
25	설천면 노량리	393-5	대	국(기획재정부)	도로
26	설천면 노량리	393-6	대	오재*	도로
27	설천면 노량리	393-7	대	주우*	도로
28	설천면 노량리	393-9	대	국(미래창조과학부)	도로
29	설천면 노량리	393-11	대	이병*	도로
30	설천면 노량리	393-12	대	국(기획재정부)	도로
31	설천면 노량리	393-14	제	국(국토교통부)	도로
32	설천면 노량리	393-16	도	남해군	도로
33	설천면 노량리	394	대	한미*	도로
34	설천면 노량리	396	대	이봉*	도로
35	설천면 노량리	396-1	도	이봉*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설천면 노량리	402	대	류성*	도로
37	설천면 노량리	403	대	심영*	도로
38	설천면 노량리	404	대	박점* 외 2인	도로
39	설천면 노량리	405	대	노량리마을회	도로
40	설천면 노량리	405-3	구	국(기획재정부)	도로
41	설천면 노량리	409	대	이숙*	도로
42	설천면 노량리	410-3	답	박상*	도로
43	설천면 노량리	410-5	잡	남해군	도로
44	설천면 노량리	410-12	도	노량리마을회	도로
45	설천면 노량리	410-18	잡	국(기획재정부)	도로
46	설천면 노량리	410-19	도	국(기획재정부)	도로
47	설천면 노량리	416	대	양해*	도로
48	설천면 노량리	417-1	전	신말*	도로
49	설천면 노량리	418	대	강찬*	도로
50	설천면 노량리	420	대	강화*	도로
51	설천면 노량리	422	도	남해군	도로
52	설천면 노량리	425-1	대	강민* 외 2인	도로
53	설천면 노량리	425-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4	설천면 노량리	439-19	도	남해군	도로
55	설천면 노량리	668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56	설천면 노량리	67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7	설천면 노량리	68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 예계마을(서면 작장리, 서상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서면 서상리	286	대	김대*	도로
2	서면 서상리	286-1	도	김영*	도로
3	서면 서상리	287	대	최금*	도로
4	서면 서상리	291	대	장대*	도로
5	서면 서상리	303	전	유정*	도로
6	서면 서상리	303-1	도	남해군	도로
7	서면 서상리	304-2	전	김수*	도로
8	서면 서상리	304-4	도	남해군	도로
9	서면 서상리	304-5	도	남해군	도로
10	서면 서상리	305-1	대	최난*	도로
11	서면 서상리	306-1	답	장상*	도로
12	서면 서상리	306-3	답	장상*	도로
13	서면 서상리	307-1	대	장사*	도로
14	서면 서상리	307-2	대	박말*	도로
15	서면 서상리	309	답	이동*	도로
16	서면 서상리	310-1	도	김봉*	도로
17	서면 서상리	311-1	도	김몽*	도로
18	서면 서상리	312	답	김태*	도로
19	서면 서상리	312-1	도	김종* 외 2인	도로
20	서면 서상리	313-2	도	이동*	도로
21	서면 서상리	314-2	도	김정*	도로
22	서면 서상리	315-1	도	김만*	도로
23	서면 서상리	316-1	도	김영*	도로
24	서면 서상리	317-1	도	김근*	도로
25	서면 서상리	317-2	도	김근*	도로
26	서면 서상리	353-2	도	최채*	도로
27	서면 서상리	46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8	서면 서상리	722-21	도	남해군	도로
29	서면 서상리	751-1	답	이십*	도로
30	서면 서상리	751-7	답	노창* 외 1인	도로
31	서면 서상리	751-8	답	노창* 외 1인	도로
32	서면 서상리	751-9	답	노창* 외 1인	도로
33	서면 서상리	752-7	도	남해군	도로
34	서면 서상리	752-9	장	남해군	도로
35	서면 서상리	1196-1	도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서면 서상리	1316-3	구	국(기획재정부)	도로
37	서면 서상리	1316-4	제	국(기획재정부)	도로
38	서면 서상리	1316-6	잡	국(기획재정부)	도로
39	서면 서상리	1316-7	도	국(기획재정부)	도로
40	서면 서상리	1316-13	잡	경상남도	도로
41	서면 서상리	1316-22	제	남해군	도로
42	서면 서상리	1316-23	잡	남해군	도로
43	서면 서상리	1316-24	도	남해군	도로
44	서면 서상리	1316-25	잡	남해군	도로
45	서면 서상리	1316-29	잡	남해군	도로
46	서면 서상리	1585-1	도	남해군	도로
47	서면 서상리	1586-3	도	남해군	도로
48	서면 서상리	1586-6	도	경상남도	도로
49	서면 서상리	1602-2	도	남해군	도로
50	서면 서상리	1602-4	도	경상남도	도로
51	서면 서상리	1613-4	도	경상남도	도로
52	서면 서상리	1640-15	임	김학*	도로
53	서면 서상리	1640-16	도	남해군	도로
54	서면 서상리	1640-20	전	김도*	도로
55	서면 서상리	1640-30	도	곽성*	도로
56	서면 서상리	1640-33	도	남해군	도로
57	서면 서상리	1640-35	도	박실*	도로
58	서면 서상리	1640-38	도	박실*	도로
59	서면 서상리	1640-45	도	곽주*	도로
60	서면 서상리	1640-53	도	경상남도	도로
61	서면 서상리	1640-100	도	경상남도	도로
62	서면 서상리	1640-115	대	김종*	도로
63	서면 서상리	1643-2	도	곽주*	도로
64	서면 서상리	1643-4	도	곽주*	도로
65	서면 서상리	1647-2	도	곽익*	도로
66	서면 서상리	1648-5	도	경상남도	도로
67	서면 서상리	1661-2	도	남해군	도로
68	서면 서상리	1664-2	답	곽인*	도로
69	서면 서상리	1665-3	대	곽인*	도로
70	서면 서상리	1666-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71	서면 서상리	1666-11	도	경상남도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72	서면 서상리	1667-3	도	경상남도	도로
73	서면 서상리	1667-7	도	남해군	도로
74	서면 서상리	1669-1	도	이건*	도로
75	서면 서상리	1673	대	곽정*	도로
76	서면 서상리	1674-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77	서면 서상리	1674-3	대	정진*	도로
78	서면 서상리	1674-4	잡	남해군	도로
79	서면 서상리	1674-7	도	남해군	도로
80	서면 서상리	1674-10	도	남해군	도로
81	서면 서상리	1674-15	계	국(국토교통부)	도로
82	서면 서상리	1674-1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83	서면 서상리	168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84	서면 서상리	1687	천	국(국토교통부)	도로
85	서면 서상리	1698-2	구	노창* 외 1인	도로
86	서면 서상리	1704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87	서면 서상리	170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88	서면 서상리	900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89	서면 서상리	산171	임	남해문화류씨충경공파진사공 동춘소종회	도로
90	서면 작장리	25-1	도	남해군	도로
91	서면 작장리	25-2	도	남해군	도로
92	서면 작장리	26	대	김문*	도로
93	서면 작장리	26-1	도	남해군	도로
94	서면 작장리	27-1	도	곽문*	도로
95	서면 작장리	27-2	대	곽문*	도로
96	서면 작장리	28-1	도	남해군	도로
97	서면 작장리	29-1	도	남해군	도로
98	서면 작장리	30-1	도	곽상*	도로
99	서면 작장리	31-1	도	곽현*	도로
100	서면 작장리	32-10	도	곽덕*	도로
101	서면 작장리	32-11	도	곽재*	도로
102	서면 작장리	32-12	도	남해군	도로
103	서면 작장리	33-1	도	남해군	도로
104	서면 작장리	39-1	도	곽문*	도로
105	서면 작장리	40	대	김덕*	도로
106	서면 작장리	40-1	도	김덕*	도로
107	서면 작장리	43	대	곽정*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08	서면 작장리	43-3	도	곽치*	도로
109	서면 작장리	45	대	배동*	도로
110	서면 작장리	45-2	도	남해군	도로
111	서면 작장리	46	대	박은*	도로
112	서면 작장리	46-1	도	곽희*	도로
113	서면 작장리	49	대	석천현*	도로
114	서면 작장리	52-1	도	남해군	도로
115	서면 작장리	53	대	박철*	도로
116	서면 작장리	53-1	도	남해군	도로
117	서면 작장리	53-2	도	남해군	도로
118	서면 작장리	53-3	도	남해군	도로
119	서면 작장리	54-1	도	남해군	도로
120	서면 작장리	55	대	곽휘*	도로
121	서면 작장리	55-1	도	남해군	도로
122	서면 작장리	56	대	박정*	도로
123	서면 작장리	56-1	도	남해군	도로
124	서면 작장리	58	대	곽창* 외 1인	도로
125	서면 작장리	58-1	도	곽창* 외 1인	도로
126	서면 작장리	59	대	곽철*	도로
127	서면 작장리	59-1	도	남해군	도로
128	서면 작장리	60-1	도	예계마을회	도로
129	서면 작장리	62-1	대	곽창*	도로
130	서면 작장리	62-6	도	곽창*	
131	서면 작장리	66-1	도	최숙*	도로
132	서면 작장리	68	대	박순*	도로
133	서면 작장리	68-1	도	박순*	도로
134	서면 작장리	69-1	도	남해군	도로
135	서면 작장리	70-1	도	곽영* 외 1인	도로
136	서면 작장리	71	대	곽국*	도로
137	서면 작장리	71-1	도	곽국*	도로
138	서면 작장리	72	대	곽은*	도로
139	서면 작장리	72-1	도	곽선*	도로
140	서면 작장리	73-1	도	남해군	도로
141	서면 작장리	73-2	도	남해군	도로
142	서면 작장리	73-3	대	곽성*	도로
143	서면 작장리	74-1	도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44	서면 작장리	76-1	도	남해군	도로
145	서면 작장리	78-1	도	남해군	도로
146	서면 작장리	79	대	곽종*	도로
147	서면 작장리	79-1	도	곽재*	도로
148	서면 작장리	82	대	곽진*	도로
149	서면 작장리	82-1	도	김순*	도로
150	서면 작장리	89-3	대	류순*	도로
151	서면 작장리	89-6	대	연정*	도로
152	서면 작장리	90	대	관신*	도로
153	서면 작장리	90-1	도	남해군	도로
154	서면 작장리	92-1	도	남해군	도로
155	서면 작장리	93-1	도	남해군	도로
156	서면 작장리	105-2	전	곽유*	도로
157	서면 작장리	105-4	대	곽유*	도로
158	서면 작장리	105-5	답	곽유*	도로
159	서면 작장리	105-7	도	곽수*	도로
160	서면 작장리	105-8	도	곽유*	도로
161	서면 작장리	105-9	도	박홍*	도로
162	서면 작장리	106	대	곽영*	도로
163	서면 작장리	106-2	대	예계마을회	도로
164	서면 작장리	106-3	도	곽두*	도로
165	서면 작장리	106-4	도	남해군	도로
166	서면 작장리	106-5	도	남해군	도로
167	서면 작장리	107-4	전	곽영*	도로
168	서면 작장리	107-8	도	남해군	도로
169	서면 작장리	113-1	도	남해군	도로
170	서면 작장리	113-3	도	남해군	도로
171	서면 작장리	125-2	도	남해군	도로
172	서면 작장리	125-4	도	경상남도	도로
173	서면 작장리	127-2	도	곽상*	도로
174	서면 작장리	1520	천	국(국토교통부)	도로
175	서면 작장리	152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76	서면 서상리	기타	공유수면	지적없음	도로

## - 대계마을(고현면 대곡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고현면 대곡리	181-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구거
2	고현면 대곡리	185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3	고현면 대곡리	548-5	도	남해군	도로
4	고현면 대곡리	548-6	도	남해군	도로
5	고현면 대곡리	552	답	장영*	도로
6	고현면 대곡리	553	전	장봉*	도로
7	고현면 대곡리	554-2	전	남해군	도로
8	고현면 대곡리	557-1	창	장상*	도로
9	고현면 대곡리	557-2	도	장인*	도로
10	고현면 대곡리	558	전	장준*	도로
11	고현면 대곡리	559	답	장영*	도로
12	고현면 대곡리	560	전	박정*	도로
13	고현면 대곡리	563	대	서인*	도로
14	고현면 대곡리	564	대	김일*	도로
15	고현면 대곡리	842-1	답	장동*	도로
16	고현면 대곡리	842-4	도	남해군	도로
17	고현면 대곡리	843-1	답	장동*	도로
18	고현면 대곡리	857-3	도	남해군	도로
19	고현면 대곡리	886-2	도	장재*	도로
20	고현면 대곡리	891-2	도	장재*	도로
21	고현면 대곡리	900-1	도	남해군	도로
22	고현면 대곡리	901-1	도	남해군	도로
23	고현면 대곡리	901-2	도	장본재*	도로
24	고현면 대곡리	910-2	도	남해군	도로
25	고현면 대곡리	910-3	도	장본재*	도로
26	고현면 대곡리	910-5	도	남해군	도로
27	고현면 대곡리	910-6	도	남해군	도로
28	고현면 대곡리	934-2	도	남해군	도로
29	고현면 대곡리	934-3	도	남해군	도로
30	고현면 대곡리	936-8	답	남해군	도로
31	고현면 대곡리	937-1	도	남해군	도로
32	고현면 대곡리	937-2	전	남해군	도로
33	고현면 대곡리	937-5	도	남해군	도로
34	고현면 대곡리	938-1	도	남해군	도로
35	고현면 대곡리	955-2	대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고현면 대곡리	955-3	목	이재*	도로
37	고현면 대곡리	955-4	답	남해군	도로
38	고현면 대곡리	956-2	대	남해군	도로
39	고현면 대곡리	956-3	답	남해군	도로
40	고현면 대곡리	960-3	도	남해군	도로
41	고현면 대곡리	960-4	도	남해군	도로
42	고현면 대곡리	960-5	답	남해군	도로
43	고현면 대곡리	960-6	답	남해군	도로
44	고현면 대곡리	961-3	도	남해군	도로
45	고현면 대곡리	964-1	도	남해군	도로
46	고현면 대곡리	964-2	답	남해군	도로
47	고현면 대곡리	964-3	답	남해군	도로
48	고현면 대곡리	973-4	도	남해군	도로
49	고현면 대곡리	974-1	도	남해군	도로
50	고현면 대곡리	977-1	도	남해군	도로
51	고현면 대곡리	977-2	답	남해군	도로
52	고현면 대곡리	978-1	도	남해군	도로
53	고현면 대곡리	978-2	답	남해군	도로
54	고현면 대곡리	979	답	이상*	도로
55	고현면 대곡리	979-1	도	남해군	도로
56	고현면 대곡리	981-1	임	김낙*	도로
57	고현면 대곡리	981-2	답	이정* 외 4인	도로
58	고현면 대곡리	981-4	도	남해군	도로
59	고현면 대곡리	981-5	답	남해군	도로
60	고현면 대곡리	982-1	도	남해군	도로
61	고현면 대곡리	985-3	도	장채*	도로
62	고현면 대곡리	987-8	도	이복*	도로
63	고현면 대곡리	988-1	도	남해군	도로
64	고현면 대곡리	989	잡	이정*	도로
65	고현면 대곡리	989-1	도	남해군	도로
66	고현면 대곡리	991-1	도	이완*	도로
67	고현면 대곡리	991-2	잡	박점*	도로
68	고현면 대곡리	991-3	도	이완*	도로
69	고현면 대곡리	991-6	잡	박점*	도로
70	고현면 대곡리	991-8	전	이완*	도로
71	고현면 대곡리	991-9	도	이완*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72	고현면 대곡리	991-10	도	이완*	도로
73	고현면 대곡리	991-11	임	이완*	도로
74	고현면 대곡리	991-12	임	이완*	도로
75	고현면 대곡리	991-14	도	이완*	도로
76	고현면 대곡리	991-15	도	이완*	도로
77	고현면 대곡리	991-16	임	이한*	도로
78	고현면 대곡리	995	답	이한*	도로
79	고현면 대곡리	995-1	도	이한*	도로
80	고현면 대곡리	995-2	도	이한*	도로
81	고현면 대곡리	995-3	도	남해군	도로
82	고현면 대곡리	996-1	도	이봉*	도로
83	고현면 대곡리	996-2	도	이병*	도로
84	고현면 대곡리	997-1	도	이채*	도로
85	고현면 대곡리	997-2	도	남해군	도로
86	고현면 대곡리	998-1	도	남해군	도로
87	고현면 대곡리	1000-1	도	남해군	도로
88	고현면 대곡리	1003-1	도	남해군	도로
89	고현면 대곡리	1005	답	이미* 외 1인	도로
90	고현면 대곡리	1005-1	도	이춘*	도로
91	고현면 대곡리	1014-1	도	이춘*	도로
92	고현면 대곡리	1017	대	차연*	도로
93	고현면 대곡리	1017-1	도	남해군	도로
94	고현면 대곡리	1018-1	전	이일*	도로
95	고현면 대곡리	1019	전	박영*	도로
96	고현면 대곡리	1019-1	도	박영*	도로
97	고현면 대곡리	1021	대	신영*	도로
98	고현면 대곡리	1021-1	도	이태*	도로
99	고현면 대곡리	1021-2	도	이태*	도로
100	고현면 대곡리	1022-1	도	이상*	도로
101	고현면 대곡리	1023-3	도	이관*	도로
102	고현면 대곡리	1023-4	도	남해군	도로
103	고현면 대곡리	1025-1	도	이완*	도로
104	고현면 대곡리	1027-1	도	남해군	도로
105	고현면 대곡리	1028-1	도	이민*	도로
106	고현면 대곡리	1029	대	이일*	도로
107	고현면 대곡리	1030-1	도	강애*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08	고현면 대곡리	1030-2	도	강애*	도로
109	고현면 대곡리	1031	전	조예*	도로
110	고현면 대곡리	1031-1	도	조예*	도로
111	고현면 대곡리	1032-1	도	이순*	도로
112	고현면 대곡리	1033-1	도	남해군	도로
113	고현면 대곡리	1034	대	이재*	도로
114	고현면 대곡리	1034-2	도	송명*	도로
115	고현면 대곡리	1035	대	박점*	도로
116	고현면 대곡리	1036	대	대계마을회	도로
117	고현면 대곡리	1036-1	도	남해군	도로
118	고현면 대곡리	1037-1	도	목하기*	도로
119	고현면 대곡리	1042-5	임	대계마을회	도로
120	고현면 대곡리	1042-8	임	대계마을회	도로
121	고현면 대곡리	1090	대	강윤*	도로
122	고현면 대곡리	1091	대	박영*	도로
123	고현면 대곡리	1091-1	도	신정재*	도로
124	고현면 대곡리	1099	전	장상*	도로
125	고현면 대곡리	1099-1	도	남해군	도로
126	고현면 대곡리	1108	전	이기*	도로
127	고현면 대곡리	1108-1	도	이대*	도로
128	고현면 대곡리	1111	전	박주*	도로
129	고현면 대곡리	1114	대	장상*	도로
130	고현면 대곡리	1456-1	천	국(국토교통부)	하천
131	고현면 대곡리	1456-64	천	국(국토교통부)	하천
132	고현면 대곡리	1456-68	천	국(국토교통부)	하천
133	고현면 대곡리	146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4	고현면 대곡리	1468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5	고현면 대곡리	147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6	고현면 대곡리	1474-1	도	국(기획재정부)	도로
137	고현면 대곡리	1474-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8	고현면 대곡리	1474-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9	고현면 대곡리	147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40	고현면 대곡리	147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41	고현면 대곡리	1478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42	고현면 대곡리	산25-2	도	이효*	도로
143	고현면 대곡리	산26-2	도	김석* 외 1인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44	고현면 대곡리	산43-2	도	남해군	도로
145	고현면 대곡리	산44-3	도	이기*	도로
146	고현면 대곡리	산6000	임	국(국토교통부)	도로

- 석교마을(남면 석교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남면 석교리	47-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	남면 석교리	47-8	임	남해군	도로
3	남면 석교리	55-5	임	국(기획재정부)	도로
4	남면 석교리	55-7	전	조현*	도로
5	남면 석교리	55-11	대	김동*	도로
6	남면 석교리	55-14	전	김길*	도로
7	남면 석교리	56	전	윤창*	도로
8	남면 석교리	57	전	이덕*	도로
9	남면 석교리	57-1	도	남해군	도로
10	남면 석교리	71	전	이상*	도로
11	남면 석교리	71-1	전	정석*	도로
12	남면 석교리	71-2	전	황미*	도로
13	남면 석교리	72-4	대	김정*	도로
14	남면 석교리	72-5	대	김정*	도로
15	남면 석교리	73	대	김익*	도로
16	남면 석교리	75	대	조현*	도로
17	남면 석교리	75-1	대	조용*	도로
18	남면 석교리	76	대	김병*	도로
19	남면 석교리	77	대	안금*	도로
20	남면 석교리	78-1	대	남해군	도로
21	남면 석교리	716-3	답	이한*	도로
22	남면 석교리	153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3	남면 석교리	기타	공유수면	지적없음	도로



- 은점마을(삼동면 물건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삼동면 물건리	572-2	도	남해군	도로
2	삼동면 물건리	573-2	도	남해군	도로
3	삼동면 물건리	574-2	도	남해군	도로
4	삼동면 물건리	579-2	도	남해군	도로
5	삼동면 물건리	579-8	대	최수*	도로
6	삼동면 물건리	580-2	도	남해군	도로
7	삼동면 물건리	580-3	대	김미*	도로
8	삼동면 물건리	610-1	도	최성*	도로
9	삼동면 물건리	612-4	도	김성*	도로
10	삼동면 물건리	612-5	도	김성*	도로
11	삼동면 물건리	613	전	최점*	도로
12	삼동면 물건리	613-1	도	최점*	도로
13	삼동면 물건리	615-2	전	김홍*	도로
14	삼동면 물건리	615-5	도	박성*	도로
15	삼동면 물건리	616-1	답	최석*	도로
16	삼동면 물건리	616-3	도	최석*	도로
17	삼동면 물건리	616-4	도	최찬*	도로
18	삼동면 물건리	617	대	하창*	도로
19	삼동면 물건리	618	대	이우*	도로
20	삼동면 물건리	619	전	고한*	도로
21	삼동면 물건리	620	대	고한*	도로
22	삼동면 물건리	622	대	우인*	도로
23	삼동면 물건리	623-3	전	하정*	도로
24	삼동면 물건리	623-4	전	황남*	도로
25	삼동면 물건리	623-10	임	하정*	도로
26	삼동면 물건리	624	대	하정*	도로
27	삼동면 물건리	624-1	답	하두*	도로
28	삼동면 물건리	625-1	답	우정*	도로
29	삼동면 물건리	625-2	답	하정*	도로
30	삼동면 물건리	625-3	답	김정*	도로
31	삼동면 물건리	625-4	답	하정*	도로
32	삼동면 물건리	628	대	김성* 외 3인	도로
33	삼동면 물건리	628-24	답	김성* 외 2인	도로
34	삼동면 물건리	629-2	전	김한*	도로
35	삼동면 물건리	644-2	도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삼동면 물건리	644-3	도	남해군	도로
37	삼동면 물건리	644-4	도	남해군	도로
38	삼동면 물건리	646-1	도	남해군	도로
39	삼동면 물건리	646-2	도	남해군	도로
40	삼동면 물건리	647-1	양	남해군	도로
41	삼동면 물건리	648-1	도	남해군	도로
42	삼동면 물건리	664-15	도	남해군	도로
43	삼동면 물건리	669-11	전	박봉*	도로
44	삼동면 물건리	669-12	전	최수*	도로
45	삼동면 물건리	670-1	대	최수*	도로
46	삼동면 물건리	670-2	대	최연*	도로
47	삼동면 물건리	670-7	대	최수*	도로
48	삼동면 물건리	670-8	대	최수*	도로
49	삼동면 물건리	671-1	대	최석*	도로
50	삼동면 물건리	672-3	전	최영*	도로
51	삼동면 물건리	673	대	김미*	도로
52	삼동면 물건리	676-1	도	남해군	도로
53	삼동면 물건리	677-2	도	최정*	도로
54	삼동면 물건리	677-3	도	최정*	도로
55	삼동면 물건리	677-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6	삼동면 물건리	677-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7	삼동면 물건리	679-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8	삼동면 물건리	680	전	이희*	도로
59	삼동면 물건리	680-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0	삼동면 물건리	680-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1	삼동면 물건리	681	대	임성*	도로
62	삼동면 물건리	690	대	장영*	도로
63	삼동면 물건리	691-4	대	정경*	도로
64	삼동면 물건리	691-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5	삼동면 물건리	691-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6	삼동면 물건리	691-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7	삼동면 물건리	693-5	대	최점*	도로
68	삼동면 물건리	693-6	대	김연*	도로
69	삼동면 물건리	693-16	장	정옥*	도로
70	삼동면 물건리	694-2	도	이정*	도로
71	삼동면 물건리	694-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72	삼동면 물건리	707	대	최효*	도로
73	삼동면 물건리	707-1	대	최점*	도로
74	삼동면 물건리	707-2	대	최영*	도로
75	삼동면 물건리	708	대	김미* 외 4인	도로
76	삼동면 물건리	709	대	강재*	도로
77	삼동면 물건리	709-1	대	강재*	도로
78	삼동면 물건리	711	대	최진*	도로
79	삼동면 물건리	712-2	답	김임*	도로
80	삼동면 물건리	712-3	답	최점*	도로
81	삼동면 물건리	713	전	최진*	도로
82	삼동면 물건리	714	대	최효*	도로
83	삼동면 물건리	715-2	도	김성*	도로
84	삼동면 물건리	715-3	대	최복*	도로
85	삼동면 물건리	715-4	답	최복*	도로
86	삼동면 물건리	716-1	대	김석*	도로
87	삼동면 물건리	716-2	도	남해군	도로
88	삼동면 물건리	716-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89	삼동면 물건리	717-2	도	정재*	도로
90	삼동면 물건리	717-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91	삼동면 물건리	717-6	도	국(국토해양부)	도로
92	삼동면 물건리	719	대	권*	도로
93	삼동면 물건리	725	답	최진*	도로
94	삼동면 물건리	725-2	답	최수*	도로
95	삼동면 물건리	728	답	박정*	도로
96	삼동면 물건리	729	장	최진*	도로
97	삼동면 물건리	730-2	도	남해군	도로
98	삼동면 물건리	730-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99	삼동면 물건리	730-4	도	국(국토해양부)	도로
100	삼동면 물건리	731-2	도	남해군	도로
101	삼동면 물건리	731-3	전	김영*	도로
102	삼동면 물건리	731-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03	삼동면 물건리	731-7	도	국(국토해양부)	도로
104	삼동면 물건리	746-3	대	최학*	도로
105	삼동면 물건리	746-13	전	김미* 외 4인	도로
106	삼동면 물건리	106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07	삼동면 물건리	1067-6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08	삼동면 물건리	1067-1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09	삼동면 물건리	1067-19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10	삼동면 물건리	1067-20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11	삼동면 물건리	1067-2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12	삼동면 물건리	1068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13	삼동면 물건리	산150-5	도	정종*	도로

## - 평산마을(남면 평산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남면 평산리	1465-4	도	김현*	도로
2	남면 평산리	1467-5	도	남해군	도로
3	남면 평산리	1467-2	도	이성*	도로
4	남면 평산리	1467-4	도	남해군	도로
5	남면 평산리	2450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6	남면 평산리	1502-1	도	이행*	도로
6-1	남면 평산리	1502	대	이행*	도로
7	남면 평산리	1503-1	도	이행*	도로
8	남면 평산리	1560-6	도	남해군	도로
8-1	남면 평산리	1503	대	이행*	도로
9	남면 평산리	1501-1	도	이일*	도로
10	남면 평산리	1489-1	도	이몽*	도로
11	남면 평산리	1484-2	도	박차*	도로
12	남면 평산리	1481-3	대	이정*	도로
13	남면 평산리	1493	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교회경남노회유지재단	도로
14	남면 평산리	1494-2	도	조재*	도로
14-1	남면 평산리	1589-1	대	박동*	도로
14-2	남면 평산리	1494-1	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교회경남노회유지재단	도로
14-3	남면 평산리	1591	대	이영*	도로
14-4	남면 평산리	1482	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교회경남노회유지재단	도로
15	남면 평산리	245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6	남면 평산리	1668-7	도	남해군	도로
17	남면 평산리	1596-6	대	이재*	도로
18	남면 평산리	1597	대	박수*	도로
19	남면 평산리	1599-7	도	이경*	도로
20	남면 평산리	1509	대	이만*	도로
20-1	남면 평산리	1505	대	김태*	도로
20-2	남면 평산리	1579	도	이익*	도로
21	남면 평산리	1577-1	도	평산2리마을회	도로
21-1	남면 평산리	1506	대	이기*	도로
21-2	남면 평산리	1522-1	대	송홍*	도로
21-3	남면 평산리	245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21-4	남면 평산리	1507	대	이기*	도로
22	남면 평산리	1560-2	전	문민*	도로
23	남면 평산리	1522	대	이흥*	도로
24	남면 평산리	1523	대	이종*	도로
24-1	남면 평산리	1578	대	평산2리마을회	도로
25	남면 평산리	1560-4	도	남해군	도로
26	남면 평산리	1573	대	강상*	도로
27	남면 평산리	1572	대	이*	도로
28	남면 평산리	1570-4	도	이천*	도로
28-1	남면 평산리	1574	대	이재* 외 2인	도로
29	남면 평산리	1564-1	대	홍선*	도로
30	남면 평산리	1570-1	대	이봉*	도로
30-1	남면 평산리	1600-3	대	허재*	도로
31	남면 평산리	1585-1	도	이정*	도로
32	남면 평산리	1585	대	이정*	도로
33	남면 평산리	1560-1	도	남해군	도로
33-1	남면 평산리	1524	대	이완*	도로
33-2	남면 평산리	1564-2	도	하두*	도로
34	남면 평산리	1565-4	도	김기*	도로
35	남면 평산리	1563-2	도	이송*	도로
36	남면 평산리	1534	전	이윤*	도로
37	남면 평산리	1561	도	문상*	도로
38	남면 평산리	1560	전	방원*	도로

## - 영지6반(삼동면 영지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삼동면 영지리	2199-2	도	최봉*	도로
2	삼동면 영지리	2201-6	전	최욱*	도로
3	삼동면 영지리	2211-6	도	경상남도	도로
4	삼동면 영지리	2211-7	도	경상남도	도로
5	삼동면 영지리	2212-1	도	경상남도	도로
6	삼동면 영지리	2197-4	도	이충*	도로
7	삼동면 영지리	2195-3	도	경상남도	도로
8	삼동면 영지리	2195-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9	삼동면 영지리	311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0	삼동면 영지리	2193-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1	삼동면 영지리	311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2	삼동면 영지리	2220-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3	삼동면 영지리	2193-3	도	경상남도	도로
14	삼동면 영지리	2192-5	도	경상남도	도로
15	삼동면 영지리	2192-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6	삼동면 영지리	2191-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7	삼동면 영지리	2190-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8	삼동면 영지리	2162	대	안앤알건설주식회사	도로
19	삼동면 영지리	2189-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0	삼동면 영지리	2188-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1	삼동면 영지리	2187-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2	삼동면 영지리	2184-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3	삼동면 영지리	2183-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4	삼동면 영지리	2182-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5	삼동면 영지리	2181-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6	삼동면 영지리	2175-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7	삼동면 영지리	2177-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8	삼동면 영지리	2176-3	도	남해군	도로
29	삼동면 영지리	2176-2	도	남해군	도로
30	삼동면 영지리	1165-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1	삼동면 영지리	1191-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2	삼동면 영지리	1165-1	답	김수* 외 1인	도로
33	삼동면 영지리	2174-4	답	김수* 외 1인	도로
34	삼동면 영지리	2174-5	답	김수* 외 1인	도로
35	삼동면 영지리	1173-2	대	이임*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삼동면 영지리	1171	답	김용*	도로
37	삼동면 영지리	310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8	삼동면 영지리	1172	답	김진*	도로
39	삼동면 영지리	1165-4	답	김수* 외 1인	도로
40	삼동면 영지리	1166-1	대	영지마을회 외 1인	도로
41	삼동면 영지리	1173-4	대	김수* 외 1인	도로
42	삼동면 영지리	2174-1	답	김수* 외 1인	도로
43	삼동면 영지리	1175-3	대	최우*	도로
44	삼동면 영지리	1185	답	최정*	도로
45	삼동면 영지리	1177-2	답	김주*	도로
46	삼동면 영지리	1184	답	최몽* 외 1인	도로
47	삼동면 영지리	1189	답	최심*	도로
48	삼동면 영지리	1188	답	최정*	도로
49	삼동면 영지리	1176-2	답	김주*	도로
50	삼동면 영지리	1198-6	도	경상남도	도로
51	삼동면 영지리	1207-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2	삼동면 영지리	1153-2	도	남해군	도로
53	삼동면 영지리	1153-1	도	경상남도	도로
54	삼동면 영지리	1152-7	도	경상남도	도로
55	삼동면 영지리	1160-4	도	남해군	도로
56	삼동면 영지리	1163-3	임	남해군	도로
57	삼동면 영지리	1163-1	도	국(기획재정부)	도로
58	삼동면 영지리	1192-5	도	경상남도	도로
59	삼동면 영지리	1160-3	대	남해군	도로
60	삼동면 영지리	1163-8	대	남해군	도로
61	삼동면 영지리	1163-15	도	경상남도	도로
62	삼동면 영지리	1196-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3	삼동면 영지리	1196-2	도	남해군	도로
64	삼동면 영지리	1196-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5	삼동면 영지리	1196-5	도	천청* 외 1인	도로
66	삼동면 영지리	1196-10	도	김소* 외 1인	도로
67	삼동면 영지리	1196-6	도	남해군	도로
68	삼동면 영지리	3104-1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9	삼동면 영지리	1162-1	도	남해군	도로
70	삼동면 영지리	1156-2	도	남해군	도로
71	삼동면 영지리	1157-1	도	남해군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72	삼동면 영지리	1158-1	도	박장*	도로
73	삼동면 영지리	1157-3	대	시문마을회	도로
74	삼동면 영지리	1151-2	도	남해군	도로
75	삼동면 영지리	309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76	삼동면 영지리	1125-2	도	남해군	도로
77	삼동면 영지리	1125-3	도	남해군	도로
78	삼동면 영지리	3089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79	삼동면 영지리	1192-2	도	국(건설부)	도로
80	삼동면 영지리	1157-5	대	선영*	도로
81	삼동면 영지리	1119-3	전	동남해농협동조합	도로
82	삼동면 영지리	1157-2	도	남해군	도로
83	삼동면 영지리	1124	대	윤희*	도로
84	삼동면 영지리	1011-2	도	남해군	도로
85	삼동면 영지리	1160-2	도	남해군	도로
86	삼동면 영지리	1012-3	전	이임*	도로
87	삼동면 영지리	1012-1	도	김석*	도로
88	삼동면 영지리	1012-4	전	남해군	도로
89	삼동면 영지리	1159-4	전	남해군	도로
90	삼동면 영지리	1159-2	대	홍진*	도로
91	삼동면 영지리	1159-1	전	홍경*	도로
91-1	삼동면 영지리	1013-5	대	남해군	도로
91-2	삼동면 영지리	1013-6	답	남해군	도로
92	삼동면 영지리	1158-4	답	남해군	도로
93	삼동면 영지리	1013-3	도	남해군	도로
94	삼동면 영지리	1013-4	대	장헌*	도로
95	삼동면 영지리	1123-2	대	윤희*	도로
96	삼동면 영지리	1121	답	홍종*	도로
97	삼동면 영지리	1063-1	대	홍동*	도로
98	삼동면 영지리	1010-2	도	홍석*	도로
99	삼동면 영지리	1009-2	도	정동*	도로
100	삼동면 영지리	1009-3	답	남해군	도로
101	삼동면 영지리	310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02	삼동면 영지리	1061-1	답	남해군	도로
103	삼동면 영지리	1060	묘	고일*	도로
104	삼동면 영지리	1057-1	답	남해군	도로
105	삼동면 영지리	983-3	답	정한*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06	삼동면 영지리	2248-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07	삼동면 영지리	983-2	도	남해군	도로
108	삼동면 영지리	984-2	도	남해군	도로
109	삼동면 영지리	979-1	도	홍동*	도로
110	삼동면 영지리	981-2	도	남해군	도로
111	삼동면 영지리	981-5	전	정창*	도로
112	삼동면 영지리	1055-1	전	김희*	도로
113	삼동면 영지리	1059	전	김말*	도로
113-1	삼동면 영지리	1058	대	서동*	도로
114	삼동면 영지리	1055-2	전	이순*	도로
115	삼동면 영지리	1055	전	정창*	도로
115-1	삼동면 영지리	1056-1	전	남해군	도로
116	삼동면 영지리	1054	대	박영*	도로
117	삼동면 영지리	1042	대	이대*	도로
118	삼동면 영지리	1081	대	김영*	도로
119	삼동면 영지리	981-4	구	한국농어촌공사	도로
119-1	삼동면 영지리	982	대	정두*	도로
120	삼동면 영지리	1023-2	전	정창*	도로
121	삼동면 영지리	1024-2	전	서맹*	도로
121-1	삼동면 영지리	1021	전	정영*	도로
122	삼동면 영지리	1045	대	김효*	도로
123	삼동면 영지리	1045-3	답	김효*	도로
124	삼동면 영지리	1044-3	대	남해군	도로
124-1	삼동면 영지리	1044-2	대	정남*	도로
125	삼동면 영지리	1043	대	정남*	도로
126	삼동면 영지리	1040-1	답	남해군	도로
127	삼동면 영지리	3107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28	삼동면 영지리	1082	대	서진*	도로
128-1	삼동면 영지리	1038	대	정종*	도로
129	삼동면 영지리	1039-1	답	남해군	도로
130	삼동면 영지리	1086-3	답	서진*	도로
131	삼동면 영지리	1039-2	답	김지*	도로
132	삼동면 영지리	1036-2	대	백호영농조합법인	도로
133	삼동면 영지리	1037	전	정창*	도로
134	삼동면 영지리	1036-4	대	정명* 외 2인	도로
135	삼동면 영지리	1036-1	답	정종*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36	삼동면 영지리	1086-1	답	서진*	도로
137	삼동면 영지리	1086-2	답	서진*	도로
138	삼동면 영지리	1090-2	대	최갑*	도로
139	삼동면 영지리	3090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 물건마을(삼동면 물건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삼동면 물건리	1063	구	국(농수산부)	도로
2	삼동면 물건리	1062-2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	삼동면 물건리	105-2	도	이영*	도로
4	삼동면 물건리	155-2	전	조성*	도로
5	삼동면 물건리	158-2	대	강중*	도로
6	삼동면 물건리	107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6-1	삼동면 물건리	324	대	김수*	도로
7	삼동면 물건리	325-1	대	이찬*	도로
8	삼동면 물건리	325-2	대	이중*	도로
9	삼동면 물건리	467-2	도	이기*	도로
10	삼동면 물건리	466-2	도	김성*	도로
11	삼동면 물건리	471-2	도	남해군	도로
12	삼동면 물건리	474-2	도	김무*	도로
13	삼동면 물건리	479	차	남해군	도로
13-1	삼동면 물건리	39-3	임	남해군	도로
14	삼동면 물건리	480	차	남해군	도로
15	삼동면 물건리	314-3	도	남해군	도로
15-1	삼동면 물건리	314-5	대	김용*	도로
16	삼동면 물건리	314-4	도	김용*	도로
17	삼동면 물건리	364-1	도	남해군	도로

## - 영지마을(삼동면 영지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삼동면 영지리	2488-1	도	남해군	도로
2	삼동면 영지리	2373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3	삼동면 영지리	2513	답	이미*	도로
4	삼동면 영지리	2513-1	도	남해군	도로
5	삼동면 영지리	2512-2	도	임안*	도로
6	삼동면 영지리	2489-1	도	남해군	도로
7	삼동면 영지리	310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8	삼동면 영지리	2512-4	도	남해군	도로
9	삼동면 영지리	2489	답	이병*	도로
10	삼동면 영지리	2489-2	도	남해군	도로
11	삼동면 영지리	2490-1	도	남해군	도로
12	삼동면 영지리	2511-1	도	남해군	도로
13	삼동면 영지리	2510-1	도	남해군	도로
14	삼동면 영지리	2506-1	도	남해군	도로
15	삼동면 영지리	2508	답	강점*	도로
16	삼동면 영지리	2508-1	도	남해군	도로
17	삼동면 영지리	2506	답	강원*	도로
18	삼동면 영지리	2495	전	최형*	도로
19	삼동면 영지리	2490	답	이미*	도로
20	삼동면 영지리	2493-1	도	남해군	도로
21	삼동면 영지리	2494-1	도	남해군	도로
22	삼동면 영지리	2494	답	서석*	도로
23	삼동면 영지리	2498	답	이성*	도로
24	삼동면 영지리	2499-2	전	강인*	도로
24-1	삼동면 영지리	2134	답	곽초* 외 8인	도로
25	삼동면 영지리	2499-6	도	최유*	도로
26	삼동면 영지리	2499-1	대	최유*	도로
27	삼동면 영지리	2128	대	최현*	도로
28	삼동면 영지리	2127	대	임청*	도로
29	삼동면 영지리	2132	답	조광*	도로
30	삼동면 영지리	2129	대	윤소석*	도로
31	삼동면 영지리	2130	답	김백*	도로
32	삼동면 영지리	2119	대	이금*	도로
33	삼동면 영지리	2115-1	답	임청*	도로
34	삼동면 영지리	2115	대	임청*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5	삼동면 영지리	2674	대	최덕*	도로
36	삼동면 영지리	2675	대	서석*	도로
37	삼동면 영지리	2654	대	강치*	도로
38	삼동면 영지리	2655	대	곽초* 외 8인	도로
39	삼동면 영지리	2672	전	강치*	도로
40	삼동면 영지리	2656	대	곽초* 외 8인	도로
41	삼동면 영지리	2507	답	강점*	도로

## - 읍지편마을(삼동명 영지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삼동면 영지리	1979-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	삼동면 영지리	1980-2	답	홍일*	도로
3	삼동면 영지리	350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4	삼동면 영지리	835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5	삼동면 영지리	352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6	삼동면 영지리	310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7	삼동면 영지리	3109-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8	삼동면 영지리	1938	전	류기*	도로
9	삼동면 영지리	1940-3	전	홍철*	도로
10	삼동면 영지리	1945-1	전	민계*	도로
11	삼동면 영지리	1945-2	도	유상*	도로
12	삼동면 영지리	1944-1	도	최한*	도로
13	삼동면 영지리	1944-2	대	영지수곡마을회	도로
13-1	삼동면 영지리	1943	대	최준*	도로
14	삼동면 영지리	1954-2	답	최준*	도로
15	삼동면 영지리	1942-6	답	최준*	도로
16	삼동면 영지리	1954-1	답	오석*	도로
17	삼동면 영지리	1956	대	최평*	도로
18	삼동면 영지리	1955	대	홍덕* 외 1인	도로
19	삼동면 영지리	1953	대	공도* 외 1인	도로
20	삼동면 영지리	1979	창	유영*	도로
21	삼동면 영지리	1938-1	전	홍철*	도로
22	삼동면 영지리	766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3	삼동면 영지리	1942-7	도	최철*	도로
24	삼동면 영지리	1940-2	도	홍규*	도로
25	삼동면 영지리	1940-1	전	홍규*	도로
26	삼동면 영지리	1941-2	대	박미*	도로
27	삼동면 영지리	1481-2	창	박미*	도로
28	삼동면 영지리	1942-1	대	정정*	도로
29	삼동면 영지리	1944-3	대	김계*	도로
30	삼동면 영지리	1942-9	답	최평*	도로
31	삼동면 영지리	1959	답	한승*	도로
32	삼동면 영지리	1942-4	전	최중*	도로
33	삼동면 영지리	1480	답	홍외*	도로
33-1	삼동면 영지리	1960	답	한승*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4	삼동면 영지리	1479	전	정성*	도로
35	삼동면 영지리	1478	대	한승*	도로
36	삼동면 영지리	1477-1	답	홍외*	도로
37	삼동면 영지리	1958	전	홍외*	도로
38	삼동면 영지리	1961	대	홍경* 외 1인	도로
39	삼동면 영지리	1962	답	유삼*	도로
40	삼동면 영지리	1923-2	도	국(기획재정부)	도로
41	삼동면 영지리	1923-1	답	국(기획재정부)	도로
42	삼동면 영지리	1921-1	잡	남해군	도로
43	삼동면 영지리	817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43-1	삼동면 영지리	363	답	정관*	도로
44	삼동면 영지리	1482-1	도	홍종*	도로
45	삼동면 영지리	1481-1	도	류기*	도로
46	삼동면 영지리	1549-16	도	남해군	도로
46-1	삼동면 영지리	1549-10	답	김정*	도로
47	삼동면 영지리	1549-28	답	남해군	도로
47-1	삼동면 영지리	공유수면	공유수면	-	도로
48	삼동면 영지리	1549-27	답	남해군	도로
49	삼동면 영지리	1541	도	국(농림수산부)	도로



- 고사마을(설천면 진목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설천면 진목리	553-1	도	박경*	도로
2	설천면 진목리	1684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	설천면 진목리	553-4	도	박부*	도로
4	설천면 진목리	552-2	도	남해군	도로
5	설천면 진목리	553-3	도	박부*	도로
7	설천면 진목리	553-7	답	박부*	도로
6	설천면 진목리	51	임	박병*	도로
7-1	설천면 진목리	131	답	박상*	도로
8	설천면 진목리	450-5	도	류막*	도로
9	설천면 진목리	453	대	양정*	도로
10	설천면 진목리	455	대	박재*	도로
11	설천면 진목리	459	대	박석*	도로
12	설천면 진목리	439	전	박정*	도로
13	설천면 진목리	440	대	정상*	도로
14	설천면 진목리	419	대	김행*	도로
15	설천면 진목리	438	대	박평*	도로
16	설천면 진목리	437	대	정채*	도로
17	설천면 진목리	436	대	정채*	도로
17-1	설천면 진목리	435	대	정채*	도로
18	설천면 진목리	427	대	김지*	도로
19	설천면 진목리	450-6	도	최일*	도로
20	설천면 진목리	450-4	답	류막*	도로
21	설천면 진목리	454	대	박지*	도로
22	설천면 진목리	450-2	답	박병*	도로
23	설천면 진목리	451	대	박선*	도로
24	설천면 진목리	442-1	전	박봉*	도로
25	설천면 진목리	424	대	박충*	도로
26	설천면 진목리	425	대	박충*	도로
26-1	설천면 진목리	426	대	박정*	도로
27	설천면 진목리	598-6	전	정현*	도로
28	설천면 진목리	598-2	대	정행* 외1인	도로
29	설천면 진목리	644	대	박기*	도로
29-1	설천면 진목리	645	대	박중*	도로
30	설천면 진목리	567	대	박진*	도로
30-1	설천면 진목리	570-3	대	박철*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1	설천면 진목리	646-1	대	정인*	도로
32	설천면 진목리	566-4	대	박성*	도로
33	설천면 진목리	566-12	대	경상남도	도로
34	설천면 진목리	648-5	답	경상남도	도로
35	설천면 진목리	647-4	도	남해군	도로
36	설천면 진목리	643-2	전	박기*	도로
37	설천면 진목리	648-3	답	정인*	도로
38	설천면 진목리	395-5	도	박봉*	도로
39	설천면 진목리	399-2	도	남해군	도로
40	설천면 진목리	392-2	도	남해군	도로
41	설천면 진목리	400-2	도	남해군	도로
42	설천면 진목리	392-1	대	박상*	도로
43	설천면 진목리	450-8	도	최일*	도로
44	설천면 진목리	449-2	도	남해군	도로
45	설천면 진목리	450-6	도	최일*	도로
46	설천면 진목리	449-3	답	박용*	도로
46-1	설천면 진목리	442-2	전	박정*	도로
47	설천면 진목리	441-1	도	정상*	도로
48	설천면 진목리	416	대	박홍*	도로
49	설천면 진목리	418	대	박일*	도로
49-1	설천면 진목리	417	대	박순*	도로
50	설천면 진목리	643-3	대	박기*	도로
51	설천면 진목리	643-4	전	박기*	도로
52	설천면 진목리	646-2	대	박재*	도로
53	설천면 진목리	657-2	도	남해군	도로
54	설천면 진목리	647-8	답	박병*	도로
55	설천면 진목리	647-3	답	박봉*	도로
56	설천면 진목리	647-11	답	경상남도	도로
57	설천면 진목리	647	도	남해군	도로
58	설천면 진목리	384-2	도	박일*	도로
59	설천면 진목리	396-2	도	박포*	도로
60	설천면 진목리	396-1	도	박포*	도로
61	설천면 진목리	395-7	도	박봉*	도로
62	설천면 진목리	395-1	답	박기*	도로
63	설천면 진목리	396-3	대	박귀*	도로
64	설천면 진목리	396-4	도	박포*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65	설천면 진목리	384-3	도	박일*	도로
66	설천면 진목리	370-1	도	박부*	도로
67	설천면 진목리	산 104-1	도	남해군	도로
68	설천면 진목리	665-3	도	남해군	도로
69	설천면 진목리	666-3	도	무원계*	도로
70	설천면 진목리	666-1	도	경상남도	도로
71	설천면 진목리	361-1	도	이정*	도로
72	설천면 진목리	364-2	도	남해군	도로
73	설천면 진목리	1684-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74	설천면 진목리	370-2	도	박부*	도로
75	설천면 진목리	367-1	대	고사마을회	도로
76	설천면 진목리	367-3	도	박낙*	도로
77	설천면 진목리	365-2	도	남해군	도로
78	설천면 진목리	366-3	도	남해군	도로
79	설천면 진목리	351-2	도	남해군	도로
80	설천면 진목리	364-4	대	박복*	도로
81	설천면 진목리	366-2	도	남해군	도로
82	설천면 진목리	351-1	대	박한*	도로
83	설천면 진목리	667-2	도	박봉*	도로
84	설천면 진목리	667-1	대	류만*	도로
85	설천면 진목리	670-2	도	남해군	도로
85-1	설천면 진목리	670-1	전	박일*	도로
86	설천면 진목리	677-3	도	남해군	도로
87	설천면 진목리	202-1	도	남해군	도로
88	설천면 진목리	202-2	도	남해군	도로
88-1	설천면 진목리	202-4	답	남해군	도로
89	설천면 진목리	246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89-1	설천면 진목리	144	창	박명*	도로
90	설천면 진목리	213-1	도	남해군	도로
91	설천면 진목리	211-1	도	남해군	도로
92	설천면 진목리	356-3	도	남해군	도로
93	설천면 진목리	209-4	도	남해군	도로
94	설천면 진목리	372-2	도	남해군	도로
95	설천면 진목리	212-1	도	남해군	도로
97	설천면 진목리	229-2	답	박대*	도로
98	설천면 진목리	230-2	답	박대*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99	설천면 진목리	353-1	도	김월*	도로
100	설천면 진목리	229-1	도	남해군	도로
101	설천면 진목리	231-4	도	남해군	도로
102	설천면 진목리	231-5	답	박상*	도로
103	설천면 진목리	산 102	임	밀양박씨기정공파두전종중	도로
104	설천면 진목리	671-2	도	남해군	도로
105	설천면 진목리	688	도	남해군	도로
106	설천면 진목리	687-3	도	남해군	도로
107	설천면 진목리	687-4	도	남해군	도로
108	설천면 진목리	672-2	도	박인*	도로
109	설천면 진목리	687-2	도	남해군	도로
110	설천면 진목리	684-1	도	남해군	도로
111	설천면 진목리	687-5	대	박봉*	도로
112	설천면 진목리	684-4	대	정명*	도로
113	설천면 진목리	202-3	답	박명*	도로
114	설천면 진목리	679	대	박상*	도로
115	설천면 진목리	201	답	박일*	도로
116	설천면 진목리	684-3	대	박을*	도로
117	설천면 진목리	680	대	박상*	도로
118	설천면 진목리	242-5	도	박성*	도로
118-1	설천면 진목리	250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18-2	설천면 진목리	238-1	대	임구*	도로
119	설천면 진목리	232-3	도	남해군	도로
120	설천면 진목리	238-2	도	남해군	도로
121	설천면 진목리	239-3	도	남해군	도로
122	설천면 진목리	242-3	도	박성*	도로
123	설천면 진목리	240-1	도	남해군	도로
124	설천면 진목리	241-1	도	남해군	도로
125	설천면 진목리	253-2	도	남해군	도로
126	설천면 진목리	681	임	박충*	도로
127	설천면 진목리	682	대	박성*	도로
128	설천면 진목리	259-3	도	남해군	도로
129	설천면 진목리	252-1	도	남해군	도로
130	설천면 진목리	256-2	도	남해군	도로
131	설천면 진목리	251-1	도	남해군	도로
132	설천면 진목리	257-1	전	박현*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33	설천면 진목리	257-2	도	남해군	도로
134	설천면 진목리	330-8	도	남해군	도로
135	설천면 진목리	259-1	도	남해군	도로
137	설천면 진목리	286-4	답	박광*	도로
136	설천면 진목리	287-2	도	남해군	도로
138	설천면 진목리	266-7	도	박재*	도로
139	설천면 진목리	266	대	박광*	도로
140	설천면 진목리	산 60-10	임	박두*	도로

－ 월곡마을(설천면 덕신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설천면 덕신리	1687-5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	설천면 덕신리	1701-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3	설천면 덕신리	1701-2	잡	국(기획재정부)	잡종지
3-1	설천면 덕신리	공유수면	공유수면		
4	설천면 덕신리	1575-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5	설천면 덕신리	1574-5	잡	국(국토교통부)	잡종지
6	설천면 덕신리	1574-1	잡	서영*	잡종지
7	설천면 덕신리	1572-1	대	김정*	대
8	설천면 덕신리	1572	대	오미*	대
9	설천면 덕신리	1573	답	최옥*	답
10	설천면 덕신리	1670	대	정영*	대
11	설천면 덕신리	1671	대	남해군	대
12	설천면 덕신리	1634-2	도	남해군	도로
13	설천면 덕신리	1635-2	도	남해군	도로
14	설천면 덕신리	1772-3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5	설천면 덕신리	1575-6	도	최상* 외 4인	도로
15-1	설천면 덕신리	1620-1	전	박연*	도로
16	설천면 덕신리	1772-19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7	설천면 덕신리	1576	대	서영*	대
17-1	설천면 덕신리	1577-2	답	김재*	도로
18	설천면 덕신리	1772-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19	설천면 덕신리	1577-1	도	김재*	도로
19-1	설천면 덕신리	1575-2	답	최상* 외 3인	도로
20	설천면 덕신리	1579-1	임	정금*	임야
21	설천면 덕신리	1685-14	임	서상*	임야
22	설천면 덕신리	1679	답	오삼*	답
23	설천면 덕신리	1678-1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24	설천면 덕신리	1678-3	임	김대*	임야
25	설천면 덕신리	1666	대	정민*	대
26	설천면 덕신리	1665	대	정영*	대
27	설천면 덕신리	1664-2	묘	남해군	묘지
28	설천면 덕신리	1639-5	도	남해군	도로
28-1	설천면 덕신리	1639	답	정찬*	도로
29	설천면 덕신리	1664-1	도	남해군	도로
30	설천면 덕신리	177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1	설천면 덕신리	1637	대	월곡마을회	대
32	설천면 덕신리	1637-1	도	남해군	도로
33	설천면 덕신리	1629	대	강봉*	대
34	설천면 덕신리	1628	전	강경*	전
35	설천면 덕신리	1627	전	강경*	전
35-1	설천면 덕신리	1624-1	전	서남*	도로
36	설천면 덕신리	1623	대	김덕*	대
37	설천면 덕신리	1621	대	김연*	대
38	설천면 덕신리	1617	대	서상*	대
39	설천면 덕신리	1624-2	전	김유*	전
40	설천면 덕신리	1608-10	창	월곡마을회	창고용지
41	설천면 덕신리	1616	대	김규*	대
41-1	설천면 덕신리	1647-6	대	강남*	도로
42	설천면 덕신리	1662	전	강대*	전
43	설천면 덕신리	1640-2	도	남해군	도로
44	설천면 덕신리	1647-8	도	남해군	도로
45	설천면 덕신리	1661	대	남해군	대
46	설천면 덕신리	1660-1	대	국(국토교통부)	대
47	설천면 덕신리	1772-12	도	국(국토교통부)	도로
48	설천면 덕신리	1660-2	도	서유*	도로
49	설천면 덕신리	1660-4	도	남해군	도로
49-1	설천면 덕신리	1649-2	도	남해군	도로
50	설천면 덕신리	1660-8	도	남해군	도로
51	설천면 덕신리	1649-3	도	남해군	도로
52	설천면 덕신리	1647-3	도	남해군	도로
53	설천면 덕신리	1649-4	도	남해군	도로
54	설천면 덕신리	1647-12	도	남해군	도로
55	설천면 덕신리	1647-9	도	남해군	도로
56	설천면 덕신리	1661-1	도	남해군	도로
56-1	설천면 덕신리	1645	답	강남*	도로
57	설천면 덕신리	1775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구거
58	설천면 덕신리	1587	창	서상*	창고용지
59	설천면 덕신리	1588	답	배영*	답
60	설천면 덕신리	1593	전	김평*	전
61	설천면 덕신리	1559	답	최옥*	답
62	설천면 덕신리	1557-1	전	김용*	전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실제현황
63	설천면 덕신리	1593-1	대	최옥*	대
64	설천면 덕신리	1594	전	박연*	전
65	설천면 덕신리	1596-1	임	정수*	임야
66	설천면 덕신리	1682-1	도	남해군	도로
67	설천면 덕신리	1618	대	정용*	대
68	설천면 덕신리	1618-2	대	박연*	대



남해군 고시 제2023-79호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64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5327	도근점	중부	240006.217	143.43	34° 45' 10.00523"	127° 51' 39.21662"	20230321	남면 평산리 산200-5	철재	남해군정	
2	15328	도근점	중부	239972.192	141.10	34° 45' 8.90958"	127° 51' 38.02385"	20230321	남면 평산리 888-2	철재	남해군정	
3	15329	도근점	중부	239935.999	138.026	34° 45' 7.73813"	127° 51' 37.59406"	20230321	남면 평산리 888-1	철재	남해군정	
4	19587	도근점	중부	254772.895	78.420	34° 53' 5.08347"	128° 00' 31.45208"	20230327	장산면 동대리 114-28	철재	남해군정	
5	19588	도근점	중부	254773.478	57.381	34° 53' 5.07089"	128° 00' 35.24421"	20230327	장산면 동대리 114-1	철재	남해군정	
6	19589	도근점	중부	254808.564	56.402	34° 53' 6.20849"	128° 00' 35.35288"	20230327	장산면 동대리 114-12	철재	남해군정	
7	19590	도근점	중부	254811.608	46.283	34° 53' 6.28945"	128° 00' 37.49657"	20230327	장산면 동대리 114-1	철재	남해군정	
8	19591	도근점	중부	254854.847	36.225	34° 53' 7.67365"	128° 00' 39.76179"	20230327	장산면 동대리 120-2	철재	남해군정	
9	11468	도근점	중부	247092.921	23.97	34° 48' 57.95907"	127° 56' 11.00076"	20230328	이동면 조음리 163-2	철재	남해군정	
10	11469	도근점	중부	247081.332	31.91	34° 48' 57.59625"	127° 56' 9.28145"	20230328	이동면 조음리 156	철재	남해군정	
11	11470	도근점	중부	247082.839	46.32	34° 48' 57.6685"	127° 56' 6.2441"	20230328	이동면 조음리 산22-3	철재	남해군정	
12	11471	도근점	중부	246562.694	211.717	34° 48' 41.6360"	127° 54' 14.3209"	20230403	이동면 다정리 산 179-1	철재	남해군정	
13	11472	도근점	중부	246606.980	214.217	34° 48' 43.0917"	127° 54' 11.8097"	20230403	이동면 다정리 산 179-1	철재	남해군정	
14	11473	도근점	중부	246724.934	190.570	34° 48' 46.8966"	127° 54' 14.8541"	20230403	이동면 다정리 산 179-1	철재	남해군정	
15	11474	도근점	중부	246796.501	190.770	34° 48' 49.2411"	127° 54' 11.8709"	20230403	이동면 다정리 산 180-4	철재	남해군정	
16	19592	도근점	중부	249906.608	78.491	34° 50' 25.68374"	128° 03' 27.40519"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1353	철재	남해군정	
17	19593	도근점	중부	249993.609	68.254	34° 50' 28.49792"	128° 03' 28.42697"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495-13	철재	남해군정	
18	19594	도근점	중부	249927.881	57.562	34° 50' 26.34759"	128° 03' 30.44291"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494-1	철재	남해군정	
19	19595	도근점	중부	249912.637	43.402	34° 50' 25.81441"	128° 03' 34.87066"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494-1	철재	남해군정	
20	19596	도근점	중부	249885.489	297013.115	34° 50' 24.90374"	128° 03' 38.28395"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1238	철재	남해군정	
21	19597	도근점	중부	249968.800	24.104	34° 50' 27.58740"	128° 03' 40.53800"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산 265-3	철재	남해군정	
22	19598	도근점	중부	249990.980	25.015	34° 50' 28.29081"	128° 03' 42.40547"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228-5	철재	남해군정	
23	19599	도근점	중부	250093.675	11.187	34° 50' 31.62185"	128° 03' 42.55224"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203-1	철재	남해군정	
24	19600	도근점	중부	250132.508	6.548	34° 50' 32.89724"	128° 03' 40.79900"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1220-23	철재	남해군정	
25	19601	도근점	중부	250087.360	8.857	34° 50' 31.44644"	128° 03' 39.17210"	20230403	장산면 진동리 1238	철재	남해군정	
26	15330	도근점	중부	239116.127	2.78	34° 44' 41.2918"	127° 51' 15.1003"	20230412	남면 임포리 1195-3	철재	남해군정	
27	15331	도근점	중부	239055.400	2.48	34° 44' 39.3096"	127° 51' 16.7438"	20230412	남면 임포리 1194	철재	남해군정	
28	15332	도근점	중부	239777.217	180.64	34° 45' 1.69816"	127° 53' 40.75233"	20230413	남면 석교리 산134-2	철재	남해군정	
29	15333	도근점	중부	239725.996	188.34	34° 45' 0.03734"	127° 53' 40.5802"	20230413	남면 석교리 1543	철재	남해군정	
30	15334	도근점	중부	239672.096	197.115	34° 44' 58.28338"	127° 53' 41.24819"	20230413	남면 석교리 산166-1	철재	남해군정	
31	9729	도근점	중부	249892.124	57.684	34° 50' 24.97754"	128° 03' 54.47541"	20230427	장산면 진동리 1338	철재	남해군정	
32	9730	도근점	중부	249934.984	63.235	34° 50' 26.33899"	128° 03' 57.82123"	20230427	장산면 진동리 1376	철재	남해군정	
33	9731	도근점	중부	249975.753	69.776	34° 50' 27.64561"	128° 03' 59.67599"	20230427	장산면 진동리 1346	철재	남해군정	
34	9856	도근점	중부	250052.657	64.308	34° 50' 30.12096"	128° 04' 1.96504"	20230427	장산면 진동리 1346	철재	남해군정	
35	19602	도근점	중부	251061.838	118.960	34° 51' 5.28999"	127° 59' 15.21491"	20230427	장산면 옥전리 1125-6	철재	남해군정	
36	19603	도근점	중부	250968.512	92.460	34° 51' 2.21783"	127° 59' 20.61088"	20230427	장산면 옥전리 1137	철재	남해군정	
37	19604	도근점	중부	250940.512	85.289	34° 51' 1.28458"	127° 59' 23.64453"	20230427	장산면 옥전리 589-6	철재	남해군정	
38	19605	도근점	중부	250884.457	76.879	34° 50' 59.43913"	127° 59' 26.90172"	20230427	장산면 옥전리 589-7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39	19606	도근점	중부	250827.898	290744.810	67.500	34° 50' 57.56247"	127° 59' 31.97423"	20230427	철재	창선면 옥천리 1133	남해군청
40	19607	도근점	중부	250829.223	290888.042	60.611	34° 50' 57.55944"	127° 59' 37.61202"	20230427	플라스틱	창선면 옥천리 519-2	남해군청
41	19608	도근점	중부	250792.476	290986.291	55.541	34° 50' 56.33555"	127° 59' 41.46451"	20230427	철재	창선면 옥천리 510-1	남해군청
42	19609	도근점	중부	250776.209	291092.967	50.961	34° 50' 55.77339"	127° 59' 45.65664"	20230427	철재	창선면 옥천리 242	남해군청
43	19610	도근점	중부	250722.978	291210.270	45.622	34° 50' 54.00845"	127° 59' 50.25253"	20230427	철재	창선면 옥천리 242	남해군청
44	19611	도근점	중부	250847.542	295700.659	130.020	34° 50' 56.56509"	128° 02' 47.03053"	20230427	플라스틱	창선면 진동리 산 153	남해군청
45	19612	도근점	중부	250884.716	295732.871	121.770	34° 50' 57.76030"	128° 02' 48.31357"	20230427	플라스틱	창선면 진동리 산 153	남해군청
46	19613	도근점	중부	250933.402	295771.878	117.371	34° 50' 59.32669"	128° 02' 49.86877"	20230427	플라스틱	창선면 진동리 산 153	남해군청
47	19614	도근점	중부	250982.444	295783.188	112.272	34° 51' 0.91405"	128° 02' 50.33408"	20230427	플라스틱	창선면 진동리 산 153	남해군청
48	17485	도근점	중부	258200.210	275165.916	1.608	35° 30' 01.1906"	129°25'57.7934"	20230503	철재	고현면 갈화리 산181	남해군청
49	17486	도근점	중부	258268.895	275238.548	0.791	35° 29' 59.5179"	129°25'57.7934"	20230503	철재	고현면 갈화리 산181	남해군청
50	17487	도근점	중부	258292.616	275135.984	1.449	35° 29' 59.5180"	129°25'57.7935"	20230503	철재	고현면 갈화리 산181	남해군청
51	11475	도근점	중부	242850.850	284341.578	80.959	34° 46' 40.71807"	127° 55' 17.07196"	20230519	철재	이동면 용소리 산123-2	남해군청
52	11476	도근점	중부	242813.398	284305.961	77.818	34° 46' 39.51346"	127° 55' 15.65785"	20230519	철재	이동면 용소리 1330-1	남해군청
53	11477	도근점	중부	242767.677	284232.757	77.617	34° 46' 38.05173"	127° 55' 12.76267"	20230519	철재	이동면 용소리 1324-2	남해군청
54	16537	도근점	중부	247792.031	277272.018	121.742	34° 49' 23.0623"	127° 50' 40.6960"	20230524	철재	서면 서호리 127-1	남해군청
55	16538	도근점	중부	247878.398	277255.886	138.579	34° 49' 25.8691"	127° 50' 40.0898"	20230524	철재	서면 서호리 113-1	남해군청
56	16539	도근점	중부	247926.668	277280.022	145.056	34° 49' 27.4287"	127° 50' 41.0555"	20230524	철재	서면 서호리 산185	남해군청
57	13504	도근점	중부	244972.870	295650.541	53.03	34° 47' 45.97634"	128° 02' 42.64932"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1075	남해군청
58	13505	도근점	중부	245022.805	295586.168	58.11	34° 47' 47.61825"	128° 02' 40.13786"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1075	남해군청
59	13506	도근점	중부	245064.306	295520.750	61.151	34° 47' 48.98685"	128° 02' 37.58181"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산66-3	남해군청
60	13507	도근점	중부	245189.316	295377.440	73.393	34° 47' 53.09117"	128° 02' 31.99619"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235-4	남해군청
61	13508	도근점	중부	245270.142	295206.461	90.894	34° 47' 55.77114"	128° 02' 25.30407"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1209	남해군청
62	13509	도근점	중부	245300.703	295163.126	94.60	34° 47' 56.7773"	128° 02' 23.61202"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1209	남해군청
63	13510	도근점	중부	245385.878	295129.268	99.216	34° 47' 59.55221"	128° 02' 22.315"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1208	남해군청
64	13511	도근점	중부	245445.052	295090.761	106.117	34° 48' 1.48507"	128° 02' 20.82446"	20230525	철재	삼동면 물건리 1207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3-80호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 예정 지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6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설치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예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남해군청 (namhae.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3. 6. 6. ~ 2023. 6. 26. (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5.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설치·운영 및 위치(붙임참조)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신설	미조초등학교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562	1	속도위반 단속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60-3708)

다. 제출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12 건설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6)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시설·운영 및 위치



위 치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562 (미조초등학교)
사진설명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운영

남해군 고시 제2023-81호

### 군도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서면 대정리 일원에 위치한 군도5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변경	군도	5	남면-서면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92-10	남해군 서면 대정리 산160-9	상가리 - 대정리	0.30	

####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23. 6. ~ 2024.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1 참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64호선) 결정(변경) 조서

###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64호선) 결정(변경) 조서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4	8	보조 간선 도로	4,262	서면 대정리 555-11	남면 상가리 903-3	일반 도로	-	제2009-10호 (2009.02.02)	군도 5호선
변경	소로	2	64	8	보조 간선 도로	4,254	서면 대정리 555-11	남면 상가리 903-3	일반 도로	-	제2009-10호 (2009.02.02)	군도 5호선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2-64호선	소로 2-64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남면 상가리 1295번지 일원</li> <li>○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원 : 8m</li> <li>- 연 장 : 4,262m → 4,254m           감) 8m</li> <li>- 면 적 : 34,187㎡ → 34,117㎡           감) 7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도5호선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현황과 불일치하는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li> </ul>



■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계				720	720			
1	남면 상가리	산92-10	임야	39	39	김*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	
2	"	산91-1	임야	11	11	김*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3	서면 대정리	산161-5	임야	104	104	김*덕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	
4	"	산162-6	임야	214	214	여*두	부산시 남구 문현동 ***~*	
5	"	산160-9	임야	352	352	여*두	부산시 진구 부암동 ***~**	

남해군 고시 제2023-8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 남 해 군 수

1.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32번길 16-6 외 14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3022)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부 여

입구분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67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32번길 16-6	20230519	20090427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310-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068	20230519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88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60번길 78	20230517	20091023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축리 710-2, 763-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축로 1	20230516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연축사가 위치한 마을이라 연축등이라 불렀으나 고종때 연축리로 고쳐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784-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09-1	20230512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장선리 408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흥신로 1336-51	20230511	20090427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장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79-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329	20230511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 해안가를 연결한 도로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30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823번길 35	20230510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184-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176-187	20230508	20090427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353-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671	20230504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서면 보건지소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광천리 287-11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344-1	20230502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10-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75번길 22	20230502	20090427	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변경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항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안길 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안길 22	20230510	20090427	남해대로2477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안길 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안길 24	20110729	20090427	남해대로2477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안길 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안길 24-1	20230510	20090427	남해대로2477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3-83호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남해군의회 승인을 받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 I. 세입·세출결산

##### 1. 총 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800,097,805,804	799,934,027,513	656,087,686,679	143,846,340,834
일반회계	685,188,605,388	684,443,237,447	561,980,126,272	122,463,111,175
특별회계	114,909,200,416	115,490,790,066	94,107,560,407	21,383,229,659
상수도특별회계	31,278,629,710	31,505,614,918	21,435,823,460	10,069,791,458
청사건립	41,934,079,560	41,944,205,649	39,922,289,700	2,021,915,949
의료급여기금	755,195,000	757,064,100	729,066,970	27,997,1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67,205,800	268,642,594	116,432,120	152,210,474
환경기초시설	40,674,090,346	41,015,262,805	31,903,948,157	9,111,314,648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800,097,805,804	802,891,683,926	799,934,027,513	236,053,210	2,721,603,203
일 반 회 계	685,188,605,388	687,351,841,270	684,443,237,447	233,772,300	2,674,831,523
특 별 회 계	114,909,200,416	115,539,842,656	115,490,790,066	2,280,910	46,771,680
상 수 도	31,278,629,710	31,541,746,238	31,505,614,918	1,686,990	34,444,330
청 사 건 립	41,934,079,560	41,944,205,649	41,944,205,649	0	0
의 료 급 여 기 금	755,195,000	757,064,100	757,064,10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67,205,800	268,642,594	268,642,594	0	0
환 경 기 초 시 설	40,674,090,346	41,028,184,075	41,015,262,805	593,920	12,327,350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800,097,805,804	656,087,686,679	117,604,053,653	26,406,065,472
일 반 회 계	685,188,605,388	561,980,126,272	99,263,224,403	23,945,254,713
특 별 회 계	114,909,200,416	94,107,560,407	18,340,829,250	2,460,810,759
상 수 도	31,278,629,710	21,435,823,460	9,560,270,430	282,535,820
청 사 건 립	41,934,079,560	39,922,289,700	2,010,584,260	1,205,600
의 료 급 여 기 금	755,195,000	729,066,970	0	26,128,03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67,205,800	116,432,120	138,326,000	12,447,680
환 경 기 초 시 설	40,674,090,346	31,903,948,157	6,631,648,560	2,138,493,629

4.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143,846,340,834	57,982,126,863	11,960,483,550	44,981,869,240	5,354,989,844	23,566,871,337
일 반 회 계	122,463,111,175	46,872,319,443	11,313,668,600	38,397,662,360	5,318,869,359	20,560,591,413
특 별 회 계	21,383,229,659	11,109,807,420	646,814,950	6,584,206,880	36,120,485	3,006,279,924
상 수 도	10,069,791,458	8,960,897,160	599,373,270	0	0	509,521,028
청 사 건 립	2,021,915,949	2,010,584,260	0	0	0	11,331,689
의료급여기금	27,997,130	0	0	0	0	27,997,13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52,210,474	138,326,000	0	0	200,990	13,683,484
환경기초시설	9,111,314,648	0	47,441,680	6,584,206,880	35,919,495	2,443,746,593

II.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없음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일 반 회 계	6건	112,760,000	16,292,000	16,292,000

3. 예산이체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이체금액	
			감 액	증 액
합	865건	211,338,756,600	211,338,756,600	211,338,756,600
일 반 회 계	800건	160,061,620,304	160,061,620,304	160,061,620,304
특 별 회 계	65건	51,277,136,296	51,277,136,296	51,277,136,296

Ⅲ.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17건	3,737,440,000	3,219,112,140	353,342,920	164,984,940

Ⅳ. 재무제표 결산 요약

(단위 : 원)

연도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2년	2,379,121,586,789	16,555,329,444	2,362,566,257,345	590,572,086,673	457,442,076,256	(133,130,010,417)
2021년	2,248,372,296,727	15,574,712,288	2,232,797,584,439	476,539,321,167	409,579,660,021	(66,959,661,146)
증 감	130,749,290,062	980,617,156	129,768,672,906	114,032,765,506	47,862,416,235	(66,170,349,271)

Ⅴ.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463,244,121	50,492,810	406,563,947	2,107,172,984
일 반 회 계	2,152,729,260	43,007,540	350,287,540	1,845,449,260
기 타 특 별 회 계	276,659,614	7,485,270	47,740,047	236,404,837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40,013,687	6,626,360	46,640,047	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236,645,927	858,910	1,100,000	236,404,837
기 금	33,855,247	0	8,536,360	25,318,887
자 활 기 금	33,855,247	0	8,536,360	25,318,887



VI. 채무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해당 없음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VII.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합계	20	115	237	29	142	66

VIII. 기금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53,554,653,794	78,174,144,356	25,200,305,030	106,528,493,120
중소기업육성기금	1,956,812,927	114,746,790	40,031,840	2,031,527,877
육외광고발전기금	70,211,510	45,114,840	46,945,360	68,380,99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4,137,678,740	3,023,436,260	6,520,918,800	640,196,200
자활기금	903,328,445	25,114,676	0	928,443,1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531,618,860	74,395,710,270	17,492,096,000	95,435,233,130
양성평등기금	1,016,832,330	5,407,460	20,019,510	1,002,220,280
재난관리기금	1,229,193,535	460,314,810	542,117,330	1,147,391,015
식품진흥기금	53,766,450	102,727,390	108,872,400	47,621,440
마늘명품화기금	5,655,210,997	1,571,860	429,303,790	5,227,479,067

I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구 분	공 유 재 산		정 수 물 품	
	건 수	금 액(원)	건 수	금 액(원)
계		866,802,410,890	1,113건	10,896,678,420
토 지	16,078,030m <sup>2</sup>	252,047,165,538	-	-
건 물	324,603m <sup>2</sup>	188,939,480,187	-	-
기 타	51,138건	425,815,765,165	-	-

남해군 고시 제2023-8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다천천(지방하천)
2. 성 명 : 공용0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00
4. 점용목적 :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662-11번지
6. 점용면적 : 5㎡
7. 점용기간 : 2023. 6. 13. ~ 2027.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3-85호

##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남해읍(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시행계획(2차)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산어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어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함.
3.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일원(선소리, 입현리, 심천리)
4. 사업 기간 : 2018년 ~ 2023년(6년간)
5. 총 사업비 : 9,360백만원(국비6,552, 지방비2,808) \*자부담 150별도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수탁 : 한국어촌어항공단)

7.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보물섬광장 조성(야외 세족장 조성, 보물섬 생태마당 및 주차장 조성)
  - 선소해맞이마당&해안테크로드 조성(L=500m, 해맞이마당 A= 370m<sup>2</sup> 등)
  - 남해 더 나눔 주차장 조성 (포켓주차장 조성 56대)
- 지역소득증대
  -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축면적 A=298.57m<sup>2</sup>, 연면적 A=495.94m<sup>2</sup> 등)
- 지역경관개선
  - 바다함께둘레길 조성 : 5개 구간 L=3,500m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경영지원 등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경제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별 사업비 내역 및 부분 승인 사업

1차 시행계획 고사분

2차 시행계획 고사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검토내용(승인여부)
		기본계획	시행계획(1차)	시행계획(2차)	증감	
총계		9,360	9,360 <150>	9,360 <150>	증 - <150>	
기초 생활 기반	소 계	4,315	4,291	4,291	감 24	
	보물섬광장 조성	1,815	1,815	1,815	-	승인
	선소 해맞이마당 & 해안데크로드 조성	2,140	2,100	2,100	감 40	승인
	더 나눔 주차장 조성	360	376	376	증 16	승인
지역 소득 증대	소 계	2,323 <150>	2,323 <150>	2,323 <150>	-	
	커뮤니티센터 조성	2,323 <150>	2,323 <150>	2,323 <150>	-	승인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1,203	1,227	1,227	증 24	
	바람의 길	390	395	395	증 5	승인
	빛의 길	247	253	253	증 6	승인
	쇠섬예술정원 조성 (쇠섬정원 리모델링)	370	374	374	증 4	승인
	토촌마을 소리길	90	96	96	증 6	승인
	보물섬광장 진입길 확폭	106	109	109	증 3	승인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380	380	380	-	승인
	교육	196.4	196.4	196.4	-	
	홍보/마케팅	98	98	98	-	
	컨설팅	48	48	48	-	
	정보화	10	10	10	-	
	마을 경영지원	27.6	27.6	27.6	-	
부대 비용	소 계	1,139	1,139	1,139	-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1,139	1,139	1,139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 84/ 호

공인 등록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신조 공인 등록 및 전자이미지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사용 개시일 : 2023. 6. 12.

2. 등록 사유 :

가. 전자이미지공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따라 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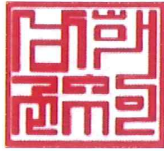
영수증 발급을 위해 등록·사용

나. 신조 공인: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로 새겨 등록·사용

3. 등록 공인명·인영

가.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인명	등록시스템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인 (전자이미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행정과

나. 신조 등록 공인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고향사랑 기금운용관인	2.0cm <sup>2</sup> 정사각형 한글훈민정음체	등록		행정과
남해군고향사랑 기금출납원인	1.8cm <sup>2</sup> 정사각형 한글훈민정음체	등록		행정과

끝.



남해군 공고 제2023-855호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사천해양경찰서 신설(2022. 3. 31.) 및 군사안보지원부대 명칭이 변경(2022. 11. 1)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화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에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 추가(안 제3조제2항)
  - 나. 위원 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 1) 군사안보지원부대 남해담당관 ⇒ 국군방첩부대 방첩관.
    - 2) 통영해양경찰서장 ⇒ 사천해양경찰서장.
  - 다. 위원 임기규정 삭제(안 제4조)
  - 라. 간사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호)
    - 1) 제8962부대 2대대 작전과장 ⇒ 제8962부대 2대대 정작과장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6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
3.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
4. 국군방첩부대 방첩관
5.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
6. 남해경찰서장
7. 사천해양경찰서장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10. 남해소방서장
11. 남해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작전과장” 을 “정작과장”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874호

##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 조성  
과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나. 지원대상(안 제4조)
    - 연고자자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원내용(안 제5조)

-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과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추모의식 비용 등이며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라. 점검·환수(안 제7조)

-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6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52,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전화 055-860-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강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계인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점검·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관계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882호

##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남해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해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조)
- 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안 제3조 ~ 제 4조)
- 다.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 라. 홍보대사 활동 저작권 귀속(안 제8조)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홍보미디어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4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홍보미디어팀(전화 055-860-3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해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남해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남해군정(이하 “군정” 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군정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2조의 임무 중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군수는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총괄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괄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892호

##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와 관련,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71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생태하천 복원 L=1.23km, 생태학습장 3개소
- 라. 사 업 기 간 : 2022. 11. ~ 2025. 02.
- 마. 공사시행자 : 경남 남해군

### 2. 편입토지 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7-1번지 외 12필지 1,587㎡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3. 6. 14. ~ 2023. 6. 29. (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으로 서면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3년 7월 ~ (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다.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협의(계약체결)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이의제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남해	아산	1000-2	답	116	116	김민0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43번길 00	
2	남해	남해	아산	990-2	답	39	39	김영0	남해읍 아산리 00	
3	남해	남해	아산	989-2	답	39	39	김영0	남해읍 아산리 00	
4	남해	남해	아산	986-2	답	18	18	김상0	남해읍 아산리 00	
5	남해	남해	아산	986-3	답	5	5	김상0	남해읍 아산리 00	
6	남해	남해	아산	985	답	526	526	김숙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0	
7	남해	남해	아산	316-1	대	4,210	92	췌신홍00	대구 북구 칠성동 00	
8	남해	남해	아산	332-12	답	8	8	정0 이두0 장환0 장승0	남해읍 아산리 00 남해읍 서변리 00 남해읍 서변리 00 남해읍 서변리 00	
9	남해	남해	아산	329	도	86	86	정윤0 장문0	남해읍 남변리 00 남해읍 북변리 00	
10	남해	남해	아산	318-1	답	14	14	췌신홍00	대구 북구 칠성동 00	
11	남해	남해	서변	327-1	전	36	36	장문0	남해읍 북변리 00	
12	남해	남해	서변	328	전	109	109	이광0	남해읍 서변리 00	
13	남해	남해	서변	333	전	499	499	김용0	-	
계						5,705	1,587	0		



남해군 의회 규칙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159
------------	-----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하복만·박종길·정현옥 의원

1. 제안이유

현행규칙 제2조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규정한 협의체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례를 반영하여 범위를 상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수정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협의체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규정(안 제2조 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8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 6일간(2023. 05. 17. ~ 05. 23.)

남해군의회 규칙 제 호

##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남해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남해군수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참고**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의 범위) 남해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남해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남해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